

제주도 양지마을
주민과 토지가 어려워 주민들이 속도에서 아파해.
양지마을에 운동하는 이들이 많아서 그들이 모임을 하는데
부정한 시장을 해제하는 대상은 있다. 임시집회 (경기장을)
개최.

‘양지마을·송현원’ 대책 마련을 위한 보고대회

일시: 1998년 9월 18일 오후 2시-6시

장소: 종로성당 3층 강당

제 1부 양지마을·송현원 사건 보고회

사회: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 2:00-2:20: 사건 경과보고/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 2:50: 양지마을·송현원 퇴소자 중언 및 대책 요구/김영화, 김광일씨 등
- 3:00: 정부 및 각 정당에 보내는 서한 채택/퇴소자 일동
- 3:10: 휴식

제 2부 양지마을·송현원 사건 사후대책에 관한 워크샵

- 3:10-3:30: 사법처리 어떻게 돼야 하나
이덕우(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3:40: (질의·응답)
- 4:00: 사회복지 시설 관리 문제에 관하여-양지마을·송현원을 중심으로
조홍식(교수,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 4:10: (질의·응답)
- 4:40: 지정토론
김정열(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소장)
김형기(인천은혜병원 건강관리소장)
법학교수 1인
- 5:10: 종합토론
- 5:20: 정부에 보내는 건의문 채택

사회수용시설 수용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이덕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987년 소위 형제복지원 사건은 당시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현대판 노예제로 불리웠던 이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는 형식논리에 빠져 “강제노동”이라는 가장 야만적인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법률적 처리를 빠뜨려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가 계속되는 사태를 막지 못하였다. 이번 양지마을 사건을 계기로 다시 이른바 “부랑인”들에 대한 강제노동을 협행법률로 어떻게 처벌하여야 하는지 중심으로 하여 기타 법률적 처리방안을 살펴보았다.

1. 감금죄

위 형제복지원사건에서 대법원은 특수감금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선고 이유는 주제발표문에 인용된 대로 내무부훈령과 지침, 치안본부의 부랑인보호대책, 부산직할시의 재생원조례 등을 근거로 형법상 정당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문의 표현대로 “수용자의 이탈을 방지하며 충분한 ‘교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정당행위의 근거라면 그 자체로도 헌법을 무시한 판결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즉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있음에도 범죄행위를 전제로 한 법원의 판결도 없이 시 공무원이나 시설운영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강제로 구금된 수용자들을 마치 유죄판결이 확정된 “기결수”처럼 생각하고 “교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상 명령, 규칙, 처분 등의 위헌심사권은 법원에 있으므로(헌법 107조 2항) 위 정당행위의 근거로 들고 있는 내무부 훈령, 부산직할시 조례 등에 대한 위헌여부를 판단하였어야만 한다. 물론 당시 공판기록을 입수하지 못하여 정확하게 지적할 수는 없으나 판결문의 내용으로 보아 검찰에서 위 규칙 등의 위헌성을 공판과정에서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일차적으로 위헌인 판결의 책임은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검찰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듦다. 설사 검찰에서 위와 같이 위헌이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률판단의 문제에 귀속되고 형사재판의 특성상 법원에서 직권으로라도 위 훈령 등의 위헌여부를 판단하였어야 옳다고 본다. 결국 위 판결은 위헌인 훈령 등을 근거로 하여 야만적인 범죄행위에 대하여 면죄부를 준 것으로 다른 시설의 운

영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2. 폭행, 상해죄 등

수용시설내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수용인들에 대한 폭행, 상해 등도 별개의 범죄 행위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검찰은 입증의 어려움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기소조차 하지 않아 미온적인 대처를 하였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3. 강도죄의 적용

당시 검찰 내부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에 강도죄를 적용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는지는 정확한 정보가 없다. 그러나 감금과 폭행 등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동력의 착취에 있고 “현대판 노예제”로 불리우는 이유도 그 핵심이 강제노동이라는 것을 여실히 나타낸다. 이번 양지마을 사건을 접하고 인권단체들에서 검토한 결과 형법상 노예를 부려 치부하는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그만큼 근대적인 형법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범죄에 대하여 처벌근거가 없다는 것에 대하여 아쉬움을 느꼈다. 그러나 형법상 가장 유사한 범죄유형으로는 강도죄가 유일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어느 형법교과서나 강도죄에는 재물강취죄와 강제이득죄가 있다고 되어 있고 이에 대한 반론은 없다. 그런데 항거할 수 없는 폭행,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없는 노동력을 강제로 제공토록 한 경우 강제이득죄에 해당된다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반론을 예상할 수 없었다. 예컨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살인을 한 경우 강도살인죄에 해당하고 택시기사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택시비 지급을 면탈한 경우 강도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용시설에 강제하고 감금하고 외부와 철저히 격리시킨채 폭행, 협박으로 공포심을 자아내어 강제로 노무를 제공토록 한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강도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수사상 현실적으로 수용인들이 항거할 수 없는 폭행, 협박에 의하여 노동을 하였는가의 입증이 문제될 수 있으나 수사의지에 따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경우 과거 형제복지원 사건과는 달리 강제노동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직시하고 그 본질에 맞는 법률적용을 하여야 할 것이고 강도죄로 처벌하는데 이론상은 물론 협행법률상으로도 아무런 장애도 없다고 보여진다.

① 246 강도죄
② 강제이득죄

기본법상의 원칙을 시계 등을 빼앗았을 경우
는 기계적으로 강도죄로 기소를 해 달라.

4. 횡령, 사기죄 등

제2로 형제복지원 사건이 농촌을 소재로 한 지역을 양자로 사고를 나누거나 임대료를
지어드는 행위로는 예외로는 농지이지.
농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유를 가지는 있는지 알지 않다.

다른 수용시설들과 마찬가지로 양지마을도 수용인들과 직원들의 수를 조작하거나 건물 신축에 수용인들을 동원하고도 수주회사의 인건비로 지급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편취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그리고 식비나 의류비, 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횡령하였다. 이러한 범죄행위들이 사기, 횡령죄에 해당됨은 물론이고 그 액수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로서 특별법에 의한 가중처벌을 하여야만 한다.

5. 개인재산에 대한 환수조치 등

복지재벌, 복지족벌 등의 명예롭지 못한 호칭을 받는 개인과 그 친인척들의 재산에 대한 철저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완전한 해결이라 할 수 없다. 즉 강제노동이라는 이번 사건의 본질도 복지사업이라는 외피를 쓴 개인적 치부의 한 형태에 불과하므로 범죄 행위로 인하여 조성된 재산에 대하여는 법률상 가능한 몫수와 국고로의 환수조치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즉 강도죄로 인하여 벌어들인 재산에 대하여는 몫수형을 과하여야 할 것이고 국가를 속여 편취한 금액이나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국고로 환수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범죄행위에 대한 정당한 형벌을 과하고 국민의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

5. 법률적 정비의 필요성

현행 보건복지부 장관의 훈령이나 지침 등은 일단 수용인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입퇴소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입소절차나 퇴소절차를 규정한 규정을 자세히 검토하면 마치 관련 공무원들이 입퇴소를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 양지마을과 같은 시설의 존속과 그 시설내에서의 합법을 가장한 범죄행위의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허울좋게도 자활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시설내의 공장, 농장 등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 강제노동의 틀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보건복지부 훈령 등은 위헌이므로 조속히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특히 부랑인수용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짙게 배어 있는 “부랑인”이라는 말도 사라져야 할 것임을 밝히고 싶다.

이사건의 핵심은 강제로 노동을 시키며 치부를 넣으려는 것인가 대출에 흥미로운 것인가를 알 것이다. 복지에서, 궁핍, 재생, 독립, 소외, 자살도 있는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 했던通り 시설은 재산이 허수로 수 있다.

<발제문 2>

사회복지 수용시설 관리 문제와 개선방안 : 양지마을 · 송현원을 중심으로

조홍식(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 머리말

사회복지시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수용시설과 이용시설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수용시설에만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데, 수용시설의 문제를 논할 때 1) 수용자, 2) 수용시설, 3) 수용자 및 수용시설과 직접, 간접으로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사회 등 크게 3 가지 체계를 동시에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용시설 관리 운영과 관련된 주요 요소들을 보면, 1) 조직관리, 2) 재정, 3) 인사 4) 프로그램의 내용 5)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5 가지 요소들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로 있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문제를 시혜적, 자선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인권의 차원에서, 양지마을과 송현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시설관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사회복지 수용시설 관리의 전제

사회복지 수용시설 관리를 바람직하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제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인권과 복지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관심이 있어야 한다.

둘째, 수용자의 자유권과 생존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하며, 특히 인간다운 생존권의 보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셋째, 시설수용자의 입·퇴소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심사과정이 인권 보장적 차원에서 적법해야 한다.

넷째, 시설의 서비스는 전문화되어야 하며, 수용자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다섯째, 시설은 정상화, 통합화의 원칙에 의거 소규모로 되어야 한다.

여섯째, 시설 관리운영의 민주화와 재정의 투명성을 위한 사회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일곱째, 시설은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개방적으로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

3. 시설관리의 평가 기준

이제부터 시설관리의 문제를 보기 위해 우선 평가 기준을 살펴보자 한다. 평가 기준을 1) 조직관리, 2) 재정, 3) 인사 4) 프로그램의 내용 5)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한다.

1) 조직관리의 평가 기준

첫째, 법인(운영주체)과 이사회의 구성 및 활동과 관련하여 법인정관과 수용시설 설립 이념의 일치성 정도를 본다.

둘째, 장·단기 시설 발전계획의 수립 여부와 합리성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조직기구 및 배치가 적절한지를 본다.

넷째, 규정인력의 배치와 업무수행이 실제로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핀다.

다섯째, 관장의 지도력, 즉 관리 스타일의 합리성, 시설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와 적절성을 파악한다.

여섯째, 시설의 기본 설비와 장비 관리 상태가 적절한지 파악한다.

2) 재정의 평가 기준

일반적으로 시설의 재정 항목을 보면, 1) 인건비 : 급여, 상여금, 일용잡급, 제수당, 퇴직금 및 적립금, 의료보험, 국민연금부담금, 기타 후생경비 등 직원인건비, 2) 운영비 : 시설직원의 출장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등 시설 운영 소요경비, 3) 실비사업비 : 시설에서 실비부담사업에 소요된 경비, 4) 무료복지사업비 : 실비부담사업을 제외한 순수한 무료사업추진에 소요된 경비, 5) 시설장비비 : 시설비, 비품구입비, 시설장비 유지비, 6) 채무상환 : 차입금 원금, 이자지급금 상환, 7) 기타 지출 : 보상금, 사례금, 소송경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재정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파악한다.

둘째, 자체수입의 투입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후원금 규모와 관리의 투명성 정도를 파악한다.

3) 인사의 평가 기준

첫째, 시설장의 전문성을 파악한다.

둘째, 시설의 기준 전문인력 확보 정도를 평가한다.

셋째, 자원봉사자 확보 정도와 관리 사항을 파악한다.

4) 프로그램의 내용 평가 기준

첫째, 수용자의 불만 및 고충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문서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처리절차 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의 유무를 파악한다.

둘째, 수용자 욕구조사의 실시정도를 평가한다.

셋째, 수용자 권리의 하나로 개인기록의 비밀보장 및 기록보존, 그리고 수용자의 인권, 품위, 건강 그리고 안전보장에 대한 기관의 정책 및 과정이 문서화되고, 또한 실시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넷째, 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그리고 평가결과에 의한 개선계획 및 행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다섯째,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개선의 정도를 파악한다. 특히 시설 외부의 우수기관을 참조하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활용하는지를 파악한다.

5) 지역사회와의 관계 평가 기준

첫째, 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지도와 만족도를 평가한다.

둘째, 시설의 지역사회 조직활동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시설 운영의 개방성 정도, 즉 지역주민 참여의 정도를 파악한다.

넷째, 시설 설비를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지역사회가 활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한다.

다섯째, 시설의 지역사회에의 복지교육과 봉사활동의 정도를 평가한다.

4. 시설 관리의 문제

1) 조직관리의 문제

“시설장 노모씨는 재증사회복지법인 천성원(68. 12. 1. 설립) 산하에 충남 연기군에 양지마을(부랑인수용시설), 송현원(정신요양원), 양지요양원(장애인수용시설), 양명보육원(고아원)을 대전 대화동 인근에 자강원(부랑인수용시설), 온달의 집(정신장애인 수용시설, 여자를 수용하는 평강의 집이 내부에 존재), 정화원(?), 원명학교(농아 특수학교) 등 8 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대전시 대화동의 한일병원과 대전 신탄진의 한일병원도 그의 소유라고 한다.

노씨는 형제복지원과 함께 87년도에 상당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대전 성지원(현 자강원)의 원장 출신으로 복지재벌이라고 할 정도로 막강한 재력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친인척을 시설의 요직에 배치하여 철저하게 족벌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운영상 비리 등이 철저하게 은폐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과거 성지원 사건으로 구속된 경력도 있어 부적격자이지만, 다른 가족들도 제대로 자격을 갖춘 경우는 드문 것 같다. 이런 무자격 친인척을 대거 핵심적인 직위에 배치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를 이루하였으며, 천성원 전체는 결국 노씨의 왕국이나 마찬가지다.”

“같은 주소지에 송현원(정신요양원)과 양지요양원(양로원 겸 정박아, 신체부자유자 수용시설)과 함께 한 담장 안에 있으며, 세 기관의 전체 수용인원은 약 8백명 정도이다. 양지마을의 시설 상황을 보면, 정문 입구 원편에 3개의 시설을 관리하는 사무실이 있고, 경계에 3미터도 넘는 콘크리트 담장(교도소 담장과 같음)이 있으며, 뒷산 쪽 담장 안에 1개 동의 건물을 신축 중이다. 원생들이 거주하는 생활실은 A, F, B 세 개 동이며, 쇼핑백, 자전차, 철공, 가방, 볼, 도장, 자동차 공구함, 등공예, 호차 등의 공장이 있고, 식당이 있다. 그리고 B동 1층에 매점과 휴게실이 있으며, 매점 옆에 여자 생활실이 있고, 2층은 1층의 절반으로 매점 위 부분에 호차 공장이 있다. 각 건물은 2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활실은 중앙 출입구가 있고, 출입구 양 옆에는 간부들의 살림방이 각 하나씩 있으며, 다시 오른편과 원편 출입문이 있으며, 안 쪽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5평정도의 큰 방 2개가 있고, 맞은편으로 3평 정도의 작은방이 3개씩 있다. 큰방에는 12~15명 정도가 수용되며, 작은 방에는 6~7명씩 수용된다. 그리고 생활실의 방마다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으며, 밤에는 생활실 밖에서 문을 잠근다. 박모 부원장, 오모 간호사의 사택은 양지마을 담장에 붙어서 내부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송현원은 양지마을 원편에 위치하며, 본관, 신관, 식당의 세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생활실은 본관과 신관에 있으며, 본관에 방 14개, 신관에 방 9개가 있다. 생활실마다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고, 밖에서 잠그게 되어 있다. 신관 하층의 경우 방 하나에 4명씩, 안에 세면장 및 화장실이 있고, 본관 방에는 7,8명씩 수용된다. 6개의 독방은 2평 미만으로 쇠창살, 식구통, 수도, 수세식 변기가 설치되어 있고, 1~4호실까지는 헛빛이 하나도 들지 않으며, 5,6호실은 헛빛이 잘 듈다. 본관 지하실에 작업장이 있다. 본관 2층에 강당이 있고, 이곳도 작업장으로 이용한다.”(98년 7월 16일과 그 이후 양지마을과 송현원에서 퇴소한 31명을 대상으로 면담한 결과 1차 보고서)

이를 통해서 볼 때, 법인(운영주체)과 이사회의 구성 및 활동과 관련하여 법인정관과 수용시설 설립 이념의 일치성 정도와 장·단기 시설 발전계획의 수립 여부와 합리성 정도에 대한 파악은 어렵지만 적어도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명백하다.

첫째, 조직기구 및 배치가 매우 부적절하다.

둘째, 규정인력의 배치와 업무수행이 실제로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셋째, 관장의 지도력, 즉 관리 스타일이 독재적이며, 시설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와 적절성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

넷째, 시설의 기본 설비와 장비 관리 상태는 한마디로 엉망이다.

2) 재정의 문제

“97년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랑인 시설의 경우 1인당 피복비로 연 53,440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런닝, 팬티세트 연 4벌, 동내의 연 1벌을 원생들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양지마을의 여성이나 송현원의 경우

는 기본적인 의생활도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매우 불결한 상태에서 생활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부의 부랑인 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은 백미 456g/일, 정맥 114g/일, 부식비로 1일 1,406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양지마을과 송현원의 경우에는 현저히 질이 낮은 밥과 부식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식비로 제공되는 지원금의 차복이 의심된다.”(98년 7월 16일과 그 이후 양지마을과 송현원에서 퇴소한 31명을 대상으로 면담한 결과 1차 보고서)

이를 볼 때, 첫째, 예산편성의 합리성이 전혀 없고,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대단히 낮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자체수입의 투입정도를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투입이 전혀 안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후원금 규모와 관리의 투명성 정도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인사 문제

“양지마을의 경우 정식 간호사 자격증은 없고, 간호보조사 정도일 것으로 판단되는 여성 간호사 1명, 상담요원이지만 무자격자 1명, 그외 사무실 여직원 약간명이 있다. 또한, 주로 감시 업무를 맡는 일반직원이 약 20명 가량 있다. 송현원의 경우 총무 1명(시설장의 셋째 아들), 주임 1명, 상담직원 1명, 소모품 담당직원 1명, 그외 직원으로 3명이 있고, 간호보조사 3명이 있다. 직원의 경우 이직율이 높아서 최초 두달 정도를 넘기기 힘들며, 직원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촉탁의로 청주 모 병원 김모(여) 과장이 있으나, 한 달에 한번 정도 와서 회진 돌듯이 한바퀴 돌고 끝난다. 의사로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과 원생들이 원생들 약을 처방하거나 약을 조절했는데, 이사장과 원장도 개입하였다.

또한, 양지마을과 송현원 모두 이사장과 원장 등 주요 간부 직원들에 충성하는 원생 간부를 세워 원생들에 대한 치밀한 통제와 지휘를 시행한다. 아마 이런 점은 천성원 산하의 다른 시설에도 거의 똑같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간부원생들에게는 시설 내에서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과 살림(동거녀와 한 방에서 생활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미끼를 활용하여 통제한다. 주요 간부직원으로부터 원생 간부로 이어지는 지휘체계는 일부 기능적 간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중층적 폭력행사 구조와 일치한다. 마치 원생들간의 자치조직처럼 위장된 이 지휘체계는 직접적으로 시설 책임자에게 돌아올 피해를 막기 위한 한 방편이기도 하다. 양지마을이나 송현원 모두 시설이나 직원, 원생간의 지휘체계 모두 교도소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98년 7월 16일과 그 이후 양지마을과 송현원에서 퇴소한 31명을 대상으로 면담한 결과 1차 보고서)

이를 볼 때, 첫째, 시설장의 전문성은 낮아 보인다.

둘째, 시설의 기준 전문인력 확보가 대단히 미흡하다.
셋째, 자원봉사자의 확보가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다.

4) 프로그램의 내용 문제

“입소과정의 문제점으로는 ‘집없이 거리를 헤매는 부랑인들을 수용해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도모한다’는 시설의 취지와는 달리, 단속반 또는 경찰의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부랑인이든 아니든’ 무차별적으로 잡혀갔다는 것이 여러 사람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다. 양지마을의 경우 주로 시설과 가까운 천안역이나 조치원역 뿐만 아니라 대전이나 온양 등 충청도 등지에서 사람들을 납치식으로 잡아온다. 이 부분은 경찰과 양지마을과의 유착관계가 매우 의심스럽다. 또한 대전의 자강원에서 노동력이 있는 사람은 노재중 이사장이 찍어서 양지마을로 데려온다. 또, 서울이나 경기도 등 타지역에서도 의뢰를 받아 납치하다시피 끌어와 수용한다. 이는 송현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입소 심사의 문제점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생활보호사업지침’에 따르면, 관할 관청은 일단 시설에 들어온 부랑인에 대해 상담을 실시해야 하며, 종교인, 사회복지전문가, 의사, 교육자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연고자, 사회복귀 가능성 등을 검토해 입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설의 장에 대해서도 월 1회 이상 원생과 상담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억울한’ 입소자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양지마을과 연기군청 측은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뿐더러, 거기엔 고의적으로 ‘의무’를 저버린 혐의도 짚어 보인다.

대다수의 원생들은 “군청 직원과 말 한 마디 나눠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원장과도 면담 한 번 해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원생도 있다. 또한 상담을 실시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입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생들에 따르면, 군청 직원이나 원장과의 상담 내용은 ‘주소와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또, 상담 과정에서 “형제와 보호자가 있으니 연락을 취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도 “알겠다”는 답변만 돌아온 뿐,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시설을 지도·감독해야 할 관할 관청의 책임방기는 이같은 인권유린을 오히려 조장하는 결과를 빚어왔으며, 나아가 시설과 관청이 서로 유착되어 있다는 의혹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퇴소 절차와 심사의 문제점은 일단 양지마을과 송현원에 들어온 원생이 퇴소심사를 거치거나 보호자와 연락하여 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수용된 원생의 상당수가 5년, 10년 이상 장기간 수용되었다는 점이 뒷받침해준다. 원생의 퇴소와 관련, 보건복지부의 ‘생활보호사업지침’은 “시설의 장이 원생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해야 하며, 원생 중에 퇴소를 원하거나 사회복귀가 가능한 자를 파악해 퇴소심사서 및 의사진단서 등 관계자료를 매월마다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양지마을이나 송현원에서는 아예 퇴소심사라는 것이 없다. 원생들 가운데엔 한 달에 한 번은 커녕, 수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상담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 여럿이었다. 입소심사와 마찬가지로 퇴소 심사 역시 엉터리였던 것이다.

또한 문제는 외부와 연락 차단 문제이다. 퇴소심사조차 없는 상황에서 양지마을 또는 송현원을 떠날 유일한 길은 가족이나 연고자가 면회를 와서 데려가는 것뿐이다. 그러나, 양지마을측은 가족의 면회마저도 방해하고 가족이 면회 온 사실을 원생에게 숨기기 조차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양지마을과 송현원에선 전화통화가 허락되지 않으며(공중전화 한 대 없다), 편지조차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이나 연고자와의 접촉이 ‘원천봉쇄’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양지마을은 퇴소하지 않은 원생을 서류상에 퇴소자로 기록해 두기까지 했는데, 이는 퇴소시키지 않고 맘껏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수용자들에게 매년 한번씩 작업동의서라는 것을 미리 인쇄된 종이에 성명과 엄지손가락 직인을 강제로 받고 있어 거부할 수 없게 하였는데, 이는 아마 감사에 걸릴 것을 우려해서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지마을의 경우는 노동력이 있는 경우만 수용한다. 노동력이 없는 경우 앓아서 쇼핑백을 만든다. 이와 같은 것은 송현원이나 양지요양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야간작업, 임업은 별로 없으나, 철야작업 했던 적도 있으며, 하루에 14시간, 16시간 등의 연장작업을 한 적도 많다. 그리고 부랑인들을 마음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시설로 이동하여 노동에 투여하였다.

한편, 양지마을과 송현원은 중충적인 폭력구조가 고착되어 있다. 최고 경영진부터 폭력을 원생들을 굴복시키려 하기 때문에 오로지 힘있는 자만이 군림하는 악육강식의 세계에 길들여지게 된다. 많은 원생들은 구조적인 폭력을 회피하기 위해 동물적인 본능으로 생존하는 법을 배우며, 이에 따라 점차 인간적인 존엄성은 사라지고, 희망을 잃고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이런 폭력은 최근 퇴소자의 증언에서 확인되듯이 목숨을 건 폭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럴 경우 많은 희생이 따를 것은 분명하다.“(98년 7월 16일과 그 이후 양지마을과 송현원에서 퇴소한 31명을 대상으로 면담한 결과 1차 보고서)

이를 통해서 볼 때, 첫째, 수용자의 불만 및 고충 처리절차가 전혀 무시되어 있고, 욕구조사는 감히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비전문적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수용자 권리의 하나로 개인기록의 비밀보장 및 기록보존, 그리고 수용자의 인권, 품위, 건강 그리고 안전보장에 대한 기관의 정책 및 과정이 전혀 문서화되어 있지 않고, 또한 실시되고 있지도 않아 곳곳에 인권침해의 요소가 너무 많이 보인다.

셋째, 수용자 복지를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 제도,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개선 등을 채택할 수가 없다. 특히 시설 외부의 우수기관을 참조하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의 활용은 생각도 할 수 없다.

5) 지역사회와의 관계 문제

시설 운영의 개방성 정도, 즉 지역주민 참여 및 시설 설비의 개방이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은 폐쇄성 때문에 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지도와 만족도를 평가할 수 없으며, 시설의 지역사회 조직활동도 없다. 따라서 시설의 지역사회에의 복지교육과 봉사활동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5. 시설 관리 문제의 개선방안

1) 시설수용자의 사회권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탈시설화 수용정책 기조가 확립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이나 효율성, 그리고 수용자의 인권 차원에서 볼 때, 이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와 일반인과 더불어 생활하게 하는 탈시설화, 정상화, 통합화 정책수립이 매우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시설복지 중심으로부터 재가복지 및 지역사회보호 위주로 전환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대규모 시설수용을 전제로 하는 기존 수용 정책 방향은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다수를 위해 소수의 수용을 통한 격리를 전제로 하는 현행 시설수용 정책은 결단코 반인권 정책의 표상이라 하겠다.

2) 수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 평가를 통한 적절한 보상과 처벌을 줄 수 있는 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입·퇴소의 자유 보장, 시설의 전문화 및 소규모화, 시설 운영의 민주화와 재정의 투명성 확보 등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무엇보다도 수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공신력 있는 전문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적절한 보상과 처벌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 특히 비리 시설의 공통된 특징인 시설의 운영과 재정 면에서의 봉건성과 폐쇄성 문제, 즉 가족과 친지로 구성된 이사회, 직원 등 소위 족벌체제를 구성하여 전횡을 휘두르는 시설의 사유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적절한 보상과 처벌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중앙정부의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비전문가인 행정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지도감독 제를 수정하여 공신력 있는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시설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정기 평가를 받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이끌어야 한다.

3) 비리 수용시설은 과감하게 국공립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화를 위해 기존의 비리가 밝혀진 민간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고 국가 직영 및 공영 시설을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비리 수용시설을 기존의 다른 민간시설에 맡기는 것은 탈시설화 및 시설의 소규모화의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다만 이 때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채용해야 하며, 점차 소규모화 해나가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감으로써 국공립이 앞서서 수용시설 관리운영의 모델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4) 시설의 개방성·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시설 비리문제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비리는 항상 관심이 덜 미치는 사각지대나 음지에서 온존한다. 따라서 시설 개방화는 비리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시설문제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모여 '민간 감시단'을 조직하여 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애정 어린 눈으로 평가, 감시, 격려하는 작업은 이러한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2/24 (금)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과 전문화가 시급하다.

사회복지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보호대상자들의 인권문제도 심각하지만, 이들을 현장에서 보호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 또한 심히 우려된다. 시설 운영자(원장)들의 종사자들에 대한 대우는 임금, 노동시간, 노동환경 등 노동조건의 3요소 어느 것에도 열악할 뿐만 아니라 - 이들의 노동시간, 임금을 최저임금제에 적용하면 엄청나게 침해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노조활동도 불법시되고 있으며, 보수 교육 등 전문성 강화의 기회도 다른 복지기관 종사자 보다 극히 빈약한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사회복지사들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설의 종사는 시설장의 친인척이나 지인들로 채워지며, 문제가 되었던 시설장들은 전문 직업인으로서 사회복지사 등의 채용을 기피하며, 종사들에게 착취에 가까운 노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수용된 입소자들 중에서 시설장의 심복을 만들어 직원으로 채용하여 수용인들을 통제하는 방식도 서슴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

따라서 시설수용자의 인권과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첨경은 바로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종사자의 자유권, 사회권 등 인권과 복지를 제대로 보장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민간연체가 수용시설을 운영한다고 있는 학생들이 신의 사망만 가지고는 살 수 없고.
그의 고문자가 되었습니다.
시내에 국가가 책임을 지어야 한다. 수도권은 옛날의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을 방지하기 위한 민간감시단 구성을 위한 제안서

수신: 사회복지 및 인권관련 단체 및 인사

발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1. 민간감시단 구성의 필요성

- 일회성 폭로로는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 시비의 고리를 깰 수 없다. 일례로 양지마을 노재중 이사장은 지난 87년에도 같은 사안으로 구속된 바 있지만 이후 더 크게 사업을 확대할 수 있었다.
- 현실적으로 관계당국의 내실 있는 지도·감독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검찰·경찰의 인지에 의한 사건처리도 기대할 수 없다. 민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압력이 있을 때야만 당국의 성실한 지도·감독을 유도할 수 있다.
- 현재 사회복지 시설 내 생활자의 규모는 전국 교도소 수용인원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이다. 이들은 강제 감금 및 강제 노역 등 상시적인 인권유린에 노출돼 있으나 사회 일반의 관심은 회박한 상태이다.
- IMF 체제하에서 노숙자 등 잠재적인 사회복지시설 수용 대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 민간감시단의 목적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감시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구조적 비리와 인권유린 소지를 제거한다.
- 관계당국의 성실한 지도와 감독을 촉구한다.
- 사회복지시설의 공개화와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 사회복지시설 내 생활자의 인권보장과 신장을 위해 노력한다.

3. 민간감시단 구성 범주

- 사회복지 및 법학관련 교수, 의사, 변호사 등 전문가
- 사회복지 및 인권관련 단체 실무자
- 사회복지학과, 특수교육학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보조적 결합

4. 민간감시단의 조직

- 각 단체간 상설 네트워크 조직을 기본으로 한다.
- 공동대표와 집행위원회를 설치한다. 집행위원회 산하에 집행 부서를 둔다.

5. 민간감시단의 활동 내용

- 사회복지시설 현황 조사 및 보고서발간
- 사안에 따라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
-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법적·행정적 제도 개선 및 마련을 위한 모색, 이를 위한 대정부 로비
- 각 시설과 근접하여 활동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직의 발굴

6. 민간감시단 발족 일정

9월 14일: 양지마을·송현원 보고대회에서 제안

---> 참가 의사가 있는 단체 및 인사 교섭

---> 발족을 위한 준비모임 2-3회

---> 민간감시단 발대식 및 기자회견(9월 말 예정)

7. 요청사항

- 이 제안서에 대한 귀 단체의 입장을 논의하여 9월 14일 보고대회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고대회 이후 각 단체 집행 책임자급의 모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 책임자급의 모임을 2-3차례 가진 후 대표자 회의를 거쳐 발대식을 갖는 단계로 일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 현재 보건복지부는 양지마을 사건 이후 부랑인 수용시설에 대한 조사작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으며, 이를 극히 일부 민간단체에 제안하였던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끝)

<건의문1>

양지마을·송현원 퇴소자가 정부 및 여야 정당에 보내는 건의문(초안)

* 오늘 보고대회에서 논의를 거쳐 내용을 정리, 퇴소자 연명으로 정부와 여야 정당에 보내게 됩니다. 이를 위해 초안을 제출합니다.

우리는 인권단체등의 현장조사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된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이사장 노재중) 산하의 충남 연기군 소재 부랑인수수용시설 양지마을(원장 박종구)과 정신요양시설 송현원에서 강제수용 중 지난 7월 16일 이후 퇴소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짧게는 몇개월에서 10여년 동안 세상과 철저하게 단절된 가운데 시설에 강제로 감금되어 노동에 혹사당해 왔습니다. 이런 노예같은 상태에서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사회는 너무도 많이 변했으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여러가지 미흡한 점들이 눈에 띕니다. 복지재벌인 노재중 등에 의해 불법 인권유린의 희생양이었던 우리는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정부와 여야 각 정당에 건의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1. 양지마을과 송현원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의 모든 시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양지마을과 송현원은 천성원의 일부일 뿐입니다. 다른 시설 내에서도 양지마을과 송현원과 같은 문제가 기본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지마을과 송현원만 문제 삼는 것은 문어발을 한 두개 자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천성원 전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다시는 노재중씨가 사회복지사업가로 재기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2. 송현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합니다. 송현원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도 양지마을과 같이 강제로 구금되고, 강제로 노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송현원에서는 7월 16일 5명이 퇴소한 이후 지금껏 아무도 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현원 원생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퇴소시킬 사람들은 퇴소시키고, 치료를 받을 사람들은 제대로 된 정신치료를 받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3. 양지마을과 송현원에서 감금상태에 있던 우리는 부푼 꿈을 안고 사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우리가 살기는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퇴소자들에 대한 생활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일부 가족들이 반겨줄 퇴소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퇴소자들은 다시 노숙자와 부랑인이 되어 떠들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 수 있도록 생활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건의합니다.

4. 우리가 양지마을과 송현원에서 감금 상태에서 강제노역을 함으로써 우리 인생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과 헤어져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권유린과 강제노역에 대한 보상문제를 시급히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은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우리도 인간답게 사회의 일원으로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1998년 9월 14일

양지마을·송현원 퇴소자 일동

<건의문 2>

'양지마을·송현원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정부에 대한 건의문(초안)

* 이 건의문은 이에 동의하는 사회단체 및 각계 인사들의 서명을 받아 연명으로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초안을 제출합니다.

양지마을과 송현원은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전 이사장 노재중, 구속중) 산하의 부랑인수용시설과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입니다. 지난 7월 16일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서 두 시설에서 벌어진 인권유린 등에 대해 확인작업을 진행하고, 이후 깊은 관심을 갖고 본 사건을 주시하고 있는 우리는 다음과 같이 본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1. 사회복지시설이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권침해와 비리를 해결할 길을 제시하기 위하여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현재의 천성원 이사회를 해체하고 양심있는 사회복지학자, 사회복지전문가, 변호사, 의사, 시민운동가 등으로 새 이사회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2. 양지마을·송현원 퇴소자들에 대한 생활 대책을 촉구합니다. 양지마을·송현원에서 퇴소한 이들에 대해서 정부는 그간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자성하고, 이들이 사회에 적응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해야 합니다. 평균 5년 이상 시설 내에 감금되었던 이들에게 스스로 생활대책을 세우라는 것은 책임 방기입니다. 퇴소자들이 다시 절망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합니다.

3.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시활동을 민간단체와 함께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껏 드러난 것처럼 보건복지부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조사작업부터 그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이르기까지 민간단체들의 열정과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사회복지시설의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곧 구성될 민간감시단과 함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동조사작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와 같은 사업들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이 그야말로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 꼭 필요한 역할을 행하는 시설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지속적인 작업을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1998년 9월 일

서명 단체 및 서명자 일동

양지마을·송현원 퇴소자 면담결과

1차 보고서

* 이 보고서는 지난 98년 7월 16일과 그 이후 양지마을과 송현원에서 퇴소한 31명을 대상으로 면담한 결과를 종합한 것입니다. 퇴소자들이 자신들이 겪은 상황을 중심으로 진술한 것들을 정리한 것이므로 많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후 보다 풍부한 진술을 근거로 보다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1998년 8월 4일

인권운동사랑방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2가 8-29 4층 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양지마을 진상조사 경과>

- 97년 12월 29일 자정경 양지마을 담을 넘어 박영섭(38)과 박영한(23)이 1차 탈출
- 2월 10일 저녁 용산구청 근처에서 경찰에 붙잡혀 용산구청에 인계됨.
- 2월 11일 새벽 2시 양지마을 도착, 살림 박탈, 각각 남녀 생활실 생활, 간부직 박탈 가방 공장 노역
- 7월 1일 새벽 2시, F동 2층 생활실 세면장 쇠창살을 낮에 절단해두었다가 탈출하게 됨. 5명이 결행했는데, 박영섭 씨와 3명 탈출에 성공.
- 7월 6일 7월 1일 탈출자 중 박영섭(38)씨 인권운동사랑방에 도착하여 양지마을의 인권침해에 대해 증언 시작.
- 7월 13일, 조치원 등 현지 상황에 대해 간접 취재하여 박영섭씨 증언 확인함.
- 7월 14일 저녁, 16일 새벽 결행을 다짐하고 준비에 착수
- 7월 15일 오후 11시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성재 의원, 김병후 원장(연희정신건강크리닉 원장), 언론기자 40여명 천안에 집결
- 7월 16일 오전 7시경 천안 출발
 - 오전 7시 30분경 양지마을 도착, 진입
 - 낮 12시경까지 양지마을과 송현원 현장 조사작업 진행
 - 오후 1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이성재의원,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김병후 원장등이 경찰과 충청남도, 충청남도 연기군 직원의 입회 하에 양지마을과 송현원 일부 원생들에 대한 심사.
 - 오후 6시경, 양지마을 18명(여자 4명), 송현원 5명 등 퇴소자 시설에서 나옴.
 - 오후 6시30분경, 양지마을에서 제공한 버스로 퇴소자 및 진상조사단 관계자 이동
 - 오후 7시 30분경, 개미고개 도착하여 묘지 확인 작업
 - 오후 8시경, 대전으로 출발
 - 오후 9시 10분경, 대전시 대홍2동 성당내 가톨릭농민회관 도착
- 7월 17일부터~18일 오전 11시까지, 대전 가톨릭농민회관에서 숙식 해결하면서 신상관계 및 증언 조사작업
- 7월 18일 오전 11시 30분경, 서울로 출발
 - 오후 3시경, 서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이덕우 등 5명의 변호사와 1차 면담

- 오후 8시경, 영등포 시립 근로자 합숙소와 인권운동사랑방 사무실, 여관 등 숙소에 도착
- 7월 19일, 민변 변호사들 퇴소자들과 만나 진술 청취, 법적 대응 검토
 - 7월 22일, 기자회견
- * 7월 17일 0시부터 14시까지 보건복지부 김경수 사무관 등 2명 양지마을 감사
- * 7월 21일, 양지마을 측 A4 용지 8쪽 분량의 해명서 발표
- * 7월 21일, 조치원 경찰서 원생 최고웅, 이진수, 김화배 씨등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 * 7월 23일부터 29일까지 보건복지부 감사 진행
- * 7월 23일, 양지마을 원생 200여명 퇴소 요구 농성, 이날부터 20~40명 단위로 양지마을에서 되소가 진행됨.
- * 8월 2일, 조치원 경찰서 양지마을 총실장 이상덕을 구속하고, 6명의 실장급 간부원생 불구속 처리함. 이는 양지마을에서 일어난 폭력행위 등을 원생들에 의한 것으로 축소하려는 의도로 보여

염려됨.

1. 노재중과 친인척 계보

사회복지법인 천성원(68. 12. 1. 설립) 산하에 충남 연기군에 양지마을(부랑인수용시설), 송현원(정신요양원), 양지요양원(장애인수용시설), 양명보육원(고아원)을 대전 대화동 인근에 자강원(부랑인수용시설), 온달의 집(정신장애인 수용시설, 여자를 수용하는 평강의 집이 내부에 존재), 정화원(?), 원명학교(농아 특수학교) 등 8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대전시 대화동의 한일병원과 대전 신탄진의 한일병원도 노재중의 소유라고 한다.

노재중은 형제복지원과 함께 87년도에 상당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대전 성지원(현 자강원)의 원장 출신으로 복지재벌이라고 할 정도로 막강한 재력가로 알려져 있다. 노재중은 그의 친인척을 시설의 요직에 배치하여 철저하게 족벌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운영상 비리 등이 철저하게 은폐될 수 있다. 또한, 노재중 본인이 과거 성지원 사건으로 구속된 경력도 있어 부적격자이지만, 다른 가족들도 제대로 자격을 갖춘 경우는 드문 것 같다. 이런 무자격 친인척을 대거 핵심적인 직위에 배치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를 이루고 있으며, 천성원 전체는 결국 노재중의 왕국이나 마찬가지다.

(1) 노재중과 본처, 자식, 친인척관계

- ① 노재중(56), 현 사회복지법인 천성원 이사장, 성지원 원장이었고, 부랑인시설연합회 총무를 역임. 최종학력은 충남대 경상대학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유자.
- ② 윤진순(57), 노재중의 본처, 온달의 집 원장
- ③ 노한호(33세 정도)-노재중의 첫째 아들, 천성원 기획실장으로 노재중의 비서역할을 했노한호의 처는 원명학교 교사라는 말이 있다.
- ④ 노준호(28세 정도)- 노재중의 둘째 아들, 평강의 집 총무. 미혼
- ⑤ 노완호(24세 정도)- 96년도 방위병 제대 후 송현원 총무로 재직중. 미혼. 노재중의 후처인 박정자의 아들로 입적하였다고 하며, 노재중이 시설을 물려주기 위해 교육을 시키는 것이라 했
- ⑥ 노**- 딸, 결혼 전 원명학교 교사로 재직
- ⑦ 노동성- 98년 6월 사망, 자강원 원장. 친척, 자강원 창설자* 자강원이 성지원에서 바뀐 것
- ⑧ 노재기- 노동성씨 사망 이후 현 자강원 원장, 이사장 사촌동생
- ⑨ 노만호- 일반 직원, 노재중의 먼 친척?

* 과거 형제복지원의 박원장이 가끔씩 찾아와서 노재중에게 어떤 식으로 하라고 지도하고 감매우 친근한 관계임.

(2) 박정자의 친인척관계

- ① 박정자(51세 정도)-노재중의 후처, 송현원 원장, 전 원명학교 교사, 노재중의 비서 출신
- ② 박종구(40)-양지마을 원장. 박정자의 친동생, 전 양지마을 총무였다가 87년부터 원상
- ③ 장병렬(여, 37세 정도)-박종구 원장 처, 전 양지마을 직원. 자강원 총무?. 공무원 출신. 85년 박원장과 결혼
- ④ 노현희(25 정도)-박정자의 딸, 사회복지사, 송현원 총무,
- ⑤ 박종민- 원장 동생-양지요양원 총무로 재직중 직원간의 불화 문제로 98년 2월 퇴직하였고, 박종민의 처도 요양원 간호사로 재직중 같이 퇴직함.

* 양지마을내 매점은 원장 개인사업이라고 원생들은 알고 있다.

2. 양지마을 개관

(1) 시설 개관

- ① 소재지: 충남 연기군 전동면 송성리 산 118-2
- ② 시설명: 양지마을
- ③ 시설종별: 성인남녀 부랑인 시설
- ④ 시설장 박종구(원장)
- ⑤ 수용정원: 475명 현원: 464명(97년 8월 현재, 보건복지부 자료)
- ⑥ 시설설치일자: 83. 2. 8.
- ⑦ 연락처: 전화 0415)62-7003 팩스 0415)62-7007

* 같은 주소지에 송현원(정신요양원)과 양지요양원(양로원 겸 정박아, 신체부자유자 수용시설)과 함께 한 담장 안에 있으며, 세 기관의 전체 수용인원은 약 8백명 정도임.
⑧ 시설: - 정문 입구 원편에 3개의 시설을 관리하는 사무실이 있고, 경계에 3미터도 넘는 콘크리트 담장(교도소 담장과 같음)이 있으며, 뒷산 쪽 담장 안에 1개동의 건물을 신축중이다.

- 원생들이 거주하는 생활실은 A, F, B 세개 동이며, 쇼핑백, 자전차, 철공, 가방, 볼, 도장, 자동차공구함, 등공예, 호차 등의 공장이 있고, 식당이 있음.
- B동 1층에 매점과 휴게실이 있으며, 매점 옆에 여자 생활실이 있고, 2층은 1층의 절반으로 매점 위 부분에 호차 공장이 있음. 각 건물은 2층으로 구성되어 있음.
- 생활실은 중앙 출입구가 있고, 출입구 양 옆에는 간부들의 살림방이 각 하나씩 있으며, 다시 오른편과 원편 출입문이 있으며, 안 쪽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5평 정도의 큰 2개가 있고, 맞은편으로 3평 정도의 작은방이 3개씩 있음. 큰방에는 12~15명 정도가 수용되며, 작은 방에는 6~7명씩 수용됨.
- 생활실의 방마다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으며, 밤에는 생활실 빛에서 문을 잠금.
- 박정자 부원장, 오명영 간호사의 사택은 양지마을 담장에 붙어서 내부에 위치함.

(2) 주요 직원

① 오간호사: 개인적으로 원장과 친분이 매우 두터움. 박원장이 모든 것을 상의함. 정식 간호사 자격증은 없고, 간호보조사 정도일 것으로 판단됨. 원생들의 의약품을 처방하고, 원생들에게 피도 눈물도 없이 악랄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85년에 결혼한 남편 신용하와의 관계에서 아들이 하나 있으며, 남편은 자강원에서 있다가 탈출하여 다시 붙잡혀서 한일병원 정신병원에 있다가 다시 탈출, 다시 잡혀서 97년 송현원 독방으로 와 있다가 현재는 한일병원 정신병동에 수용되어 있다고 함.

② 손기섭(양지마을 담당)- 상담요원이지만 무자격자. 97년 초 입사. 30세가 못됨. 키가 180센티미터 정도. 땅치가 크고, 과거에 복싱선수였다고 하는데, 원생들에게 구타를 많이 하는 것으로 원성을 사고 있다.

③ 그외 사무실 여직원 약간명이 있다. 또한, 주로 감시 업무를 맡는 일반직원이 약 20명 가량 있다.

* 간부 직원중 원장과 손기섭 주임이 가장 많이 구타를 함.

* 법정 직원 대신에 원생을 대신 직원으로 올려놓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3. 송현원 개관

(1) 시설 개관(자료 확인이 어려워 원생들 증언을 기초로 작성함)

- ① 소재지: 충남 연기군 전동면 송성리 산 118-2(양지마을, 양지요양원과 함께 있음)
- ② 시설명: 송현원

(3) 시설종별: 성인남녀 정신요양원

- ④ 시설장: 박정자(원장)
- ⑤ 수용인원: 320명(남 210명, 여 10명)(위탁자가 약 80%, 그외는 단속과 고아원 등 시설에서 이송되어 오는 경우가 있음)

정신질환자로 한일병원에 36명이 입원해 있는 상태임

- ⑥ 시설: - 양지마을 원편에 위치하며, 본관, 신관, 식당의 세 건물로 구성되어 있음.
 - 생활실은 본관과 신관에 있으며, 본관에 방 14개, 신관에 방 9개가 있다.
 - 생활실마다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고, 밖에서 잠그게 되어 있다.
 - 신관 하층의 경우 방 하나에 4명씩, 안에 세면장 및 화장실이 있고, 본관 방에는 7,8명씩 수용된다.

- 6개의 독방은 2평 미만으로 쇠창살, 식구통, 수도, 수세식 변기가 설치되어 있고, 1~4호실까지는 햇빛이 하나도 들지 않으며, 5,6호실은 햇빛이 잘 들판.

- 본관 지하실에 작업장이 있다. 본관 2층에 강당이 있고, 이곳도 작업장으로 이용

(2) 주요 직원

- ① 총무- 노재중의 셋째 아들 노완호, 한총무가 96초까지 재직하였다.
- ② 주임-최정호 주임
- ③ 상담직원-송 아무개 직원(송선생이라 부름)
- ④ 소모품 담당-김직원, 노완호 총무의 친구
- ⑤ 그외 직원으로 이직원, 윤직원이 있으며, 박직원(여자)은 여자 원생을 관리
- ⑥ 간호사 3명-최승화(21세 가량), 김미자(23살 가량), 3명에서 2명으로 줄음(지난 6월 요양원으로 편은미 간호사 옮김). 실제 자격증 소지 여부는 모르고, 간호보조사일 가능성이 높음.

* 이직율이 높아서 최초 두달 정도를 넘기기 힘들다.

* 직원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지 않는다.

* 촉탁의로 청주 제일병원 김미영 과장이 있으나, 한달에 한번 정도 와서 회진 돌듯이 한바퀴 돌고 끝난다. 의사로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과 원생들이 원생들 약을 처방하거나 양을 조절한다(노재중 이사장과 박종구 원장도 개입한다).

일주일 중 토요일 두시경 와서 한 30분간 환자실 진찰을 한다.

4. 원생 지휘체계

양지마을과 송현원 모두 이사장과 원장등 주요 간부 직원들에 충성하는 원생간부를 세워 원생들에 대한 치밀한 통제와 지휘를 시행한다. 아마 이런 점은 천성원 산하의 다른 시설에도 거의 똑같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간부원생들에게는 시설 내에서 배풀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과 살림(동거녀와 한 방에서 생활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미끼를 활용하여 통제한다. 주요 간부직원으로부터 원생 간부로 이어지는 지휘체계는 일부 기능적 간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중충적 폭력행사 구조와 일치한다. 마치 원생들간의 자치조직처럼 위장된 이 지휘체계는 직접적으로 시설 책임자에게 돌아올 피해를 막기 위한 한 방편이기도 하다. 양지마을이나 송현원 모두 시설이나 직원, 원생간의 지휘체계 모두 교도소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양지마을

① 총설장(이상곤, 57세): 원생의 생활과 작업, 규율을 모두 책임진다. 이사장과 원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면서 원생중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과거 형제복지원 출신으로 원생들에게 폭행을 많이 가해 원생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존재다.

② 반장: 공장 작업 책임을 맡은 원생간부

- 작업공장별로 가방, 볼, 영농, 예비군(원내 노가다), 목공, 호차, 자전차 등의 반장이 있다.
- * 가방 반장 진종식- 형제복지원 출신. 보통 체격이지만, 성격이 포악하다.
 - ③ 살림자는 총 16쌍. 간부 원생들에게 여자를 이사장이 지목하여 살게 하며, 생활실 밖 현관에 방을 마련하여 준다.
 - ④ 선도(김동식): 주로 원생들의 탈출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 ⑤ 실장: 생활실의 책임 간부 원생
 - ⑥ 서무와 보조: 간부 원생의 말단으로 실장의 지휘를 받으며, 보조한다.

(2) 송현원

- ① 감독: 최고의 원생간부로 하급 직원들보다 권한이 막강하다.
 - 진영준감독(42): 보통 진감독이라 불리며, 신관 생활실을 책임진다. 포악하기로 유명.
 - 이성각감독(49): 보통 이감독이라 불리며, 본관 생활실을 책임진다. 거친 욕설을 잘한다.
- * 송현원의 경우는 원생 중 감독들만 살림을 한다.
- ② 실장: 총실장은 없다.
 - 실장은 총 6명으로 남자 실장은 본관 A동과 B동, 신관 상층과 하층에 각 한명씩이며, 여자 실장은 A동과 B동에 각 1명씩이 있다.

5. 의식주 및 문화생활

(1) 피복 및 의생활

97년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랑인 시설의 경우 1인당 피복비로 연 53,440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런닝, 팬티세트 연 4벌, 동내의 연 1벌을 원생들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양지마을의 여성이나 송현원의 경우는 기본적인 의생활도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매우 불결한 상태에서 생활하게 됨을 알 수 있다.

① 양지마을 남자 원생의 경우

- 팬티와, 런닝 세트 2벌, 상의 티셔츠 2벌, 하의 2벌, 양말 2족, 담요 3장, 수건 1장이 개인별로 지급된다. 겨울에는 동내의 2벌과 돛바 1벌이 지급된다
- 작업복과 실내복은 구분이 없다. 주로 쿠리닝 하나로 작업과 생활을 다함. 현옷을 시설에서 기증받으면 골라 입게 하지만, 최근에는 기증이 거의 없다.
- 신발은 운동화 또는 고무신 중 택일하여 한켤레를 지급한다.
- 물품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헤쳤을 때는 그 물품을 갖고가서 교환한다.
- 칫솔은 개인별로 지급이 되나, 치약은 방별로 하나씩 매달아 놓고 공동으로 사용한다.
- 각자 세탁하며, 빨래비누는 방마다 하나씩 준다. 담요는 1, 2년에 한번씩 세탁한다.

② 양지마을 여성의 경우

- 동절기에는 속옷을 보름내지는 20일, 하절기에는 열흘에 한번씩. 전체가 세탁하여 빨아입는다. 이때 전체가 옷을 갈아입는다. 여성들이 매우 불결하게 느끼며, 고통을 호소한다.
- 옷은 개별 지급이 없으며고, 공동 소유다. 빨래할 때 실장이 잡히는 대로 준다. 실장에게 입보이는 경우는 입소 때 들어온 옷만을 주거나, 겨울에도 목이 끽여 추운 옷을 고의적으로 준다.
- 여름에는 팬티, 런닝, 브레이지어를 지급하지만, 실장에게 입보인 경우는 브레이지어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겨울에는 기본 속옷과 내의를 준다.
- 생리대를 타 쓰는 것도 실장의 욕을 먹으며 타 쓰게 된다.
- 담요를 개인용이 없고, 순서대로 마구 덮고, 냄새가 저독하다.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오줌이나 변을 싸는 경우에 세탁하며, 전체적으로는 이불을 한번도 세탁하지 않았다.
- 남녀 같이 세탁기가 없으며, 소형 짧순이만 있다.

③ 송현원의 경우

- 옷(내복과 외복)은 1주일에 한번씩 갈아입는다.
- 모포는 한여름에도 겨울 모포를 사용하며, 1년에 대강 원생들이 발로 밟으며 세탁한다.
- 세탁기는 없으며 소형 짧순이를 필요할 때만 이동하여 사용한다. 담요가 매우 헐어서 많 도 많으며, 텔지도 않는다. 이에 따라 피부병이 고질적으로 발생한다.
- 원생들끼리 1주일 간격으로 빨래를 하고, 속옷과 겉옷 모두다 공동으로 사용함.
- 소독은 거의 하지 않는다.(보건소에서 외부 1년에 한두번)

* 세 경우 모두 피복이 충분치 않으며, 특히 겨울에는 추위를 많이 느낀다.

(2) 식생활

정부의 부랑인 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은 백미 456g/일, 정맥 114g/일, 부식비로 1일 1,406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양지마을과 송현원의 경우에는 현저히 질이 낮은 밥과 부식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식비로 제공되는 지원금의 착복이 의심된다.

- 밥은 양은 충분하지만, 질낮은 수입쌀(안남미)을 사용하기 때문에 밥맛이 없다. 노동을 해야 하니까 밥은 많이 먹는다.

- 부식은 최근 국을 포함하여 3찬 정도가 지급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짜거나 떨건 상태이며, 양도 매우 적다.

- 96년 함께 있는 시설의 양지요양원에 영양사가 오고 나서 부터 97년 여름부터 부식이 좋아지고 있는 편이다. 이전에는 1찬만 나올 때도 있었으며, 기증되는 부식이 양이 많은 경우 그 부식만으로 반찬이 제공되고는 했다. 부식에 양념이나 조미료는 사용되지 않는다.

- 값싼 것을 시장에서 사오기 때문에 종종 상한 생선이나 채소가 원생들의 부식거리로 제공되고 했다.

- 간식이 전혀 없다. 94년까지는 양지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빵 한개씩이 간식으로 제공되었다. 일반미를 정부미로 바꿔서 그 구입가의 차이로 빵을 만들었던 것이지만, 원생들이 간식은 안 먹어도 일반미를 먹겠다고 하여 간식이 사라졌다. 그러나, 그후 한두달 일반미로 나오더니 계속 정부미로 나온다.

- 양지마을 가방공장 아간작업시 덕일통상에서 제공하는 사발면이나 봉지라면을 간식으로 먹는다. 봉지라면의 경우 봉지에 스프를 풀고, 약간 뜨거운 물을 넣어 먹으므로 제대로 된 라면 맛을 느낄 수 없다.

- 담배는 솔의 경우 1주일 1인당 2갑으로 제한되었지만, 최근에는 솔이 팔려서 제대로 공급치 못한다.

- 매점에는 담배 외에 과자나 라면 등이 있으나, 보통 한달 8천원 이하를 받기 때문에 사먹을 수 있는 양이 턱없이 부족하다. 매점에서 물건을 살 때는 거래장을 이용한다. 현금을 주지 않는 것은 탈출을 막기 위한 것이다.

- 밥을 남길 경우 혼난다. 욕설로 퍼붓고, 귀싸대기를 때린다.

- 노가다 같이 힘든 일을 하는데도, 음료수 한잔 없다. 3개월, 4개월동안 4,5만원 정도

(3) 주거생활

- 대체로 비좁은 공간에 집단 수용되어 있는 상태로 개인의 사생활은 있을 수 없다. 대부분의 원생들은 주거생활을 누릴 여유도 갖지 못한다.

- 송현원의 경우 약 20명 가량의 폐결핵 환자도 같이 수용하여 있으나, 실내에 먼지가 너무 많은 관계로 폐결핵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며,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감염될 우려가 있다.

- 문화생활은 TV 시청과 화투놀이 뿐이다.

6. 수용관계

다음 장의 표에서 보듯이 양지마을의 경우 87년 성지원(현 대전 자강원)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이후부터 부쩍 수용인원이 늘어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심사귀가의 경우 전체 5명으로 나와 거의 심사에 의한 퇴소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것만으로 강제수용이라는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또, 소위 전원관계에서 양지요양원과 송현원 전원이 많은 이유는 노동력의 활용상 양지마을에서는 더 이상 소용없는 경우와 소위 CP라는 신경안정제의 과다투입으로 인해 노동력이 상실된 경우가 아닌가 싶다. 양지마을이나 송현원 모두 한번 입소하게 되면 세상과는 철저하게 단절된다. 이 곳 시설에 입소하면 탈출하거나 보호자들이 찾으려 오지 않는 경우에는 평생토록 강제노역과 폭행에 시달리다가 '개미고개'(공동묘지)에 묻혀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된다.

(1) 양지마을 원생 명부에 나타난 수용관계

아래의 표들은 지난 7월 16일 양지마을에서 복사해준 원생 명부를 분석한 것이다.

연도별 양지마을 입소자 현황

(1983년부터 1998년 7월 16일까지)

년도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합계
명	9	5	9	6	3	34	144	129	147	162	189	149	139	176	128	92	1,521

양지마을 퇴소 사유별 통계

(1983년부터 1998년 7월 16일까지)

퇴소 사유	자진 귀가	연고 귀가	귀가 조치	귀가 조치	사망	도망	전원	요양원 전원	송현원 전원	경찰 인계	무단 퇴소	자진 입원	탈퇴	심사 귀가	승인	기타	현원	합계
명	125	328	98	36	130	48	56	76	151	7	1	7	1	5	3	1	448	1,521

* 표의 분류에서 '요양원전원'이라고 함은 양지요양원이며, 명부에는 '양요전원', '요양원전원'이라고 두가지로 표기된 것을 합한 것이다.

* '귀가'와 '자진귀가', '연고귀가'의 차이는 알 수 없다.

- 명부에서 더 분석되어야 할 것은 각 지역별 의뢰처, 수용기간 등으로 이는 입소과정의 불법성, 수용기간의 장기화 등을 입증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2) 입소과정의 문제점

'집없이 거리를 해매는 부랑인들을 수용해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도모한다'는 시설의 취지와는 달리, 단속반 또는 경찰의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부랑인이든 아니든' 무차별적으로 잡혀갔다는 것이 여러 사람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다. 양지마을의 경우 주로 시설과 가까운 천안역이나 조치원역 뿐만 아니라 대전이나 온양 등 충청도 등지에서 사람들을 납치식으로 잡아온다. 이 부분은 경찰과 양지마을과의 유착관계가 매우 의심스럽다. 또한 대전의 자강원에서 노동력이 있는 사람은 노재중 이사장이 찍어서 양지마을로 데려온다. 또, 서울이나 경기도 등 타지역에서도 의뢰를 받아 납치하다시피 끌어와 수용한다. 이는 송현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93년 입소한 이상흔(57) 씨의 경우 "천안의 한 다방에서 커피 한잔을 시켜 먹다가 화장실에 다녀와 보니 가방에 있던 돈 9만원이 없어졌다. 파출소에 신고했지만, 세 번을 신고할 때까지 오지 않았다. 그래서 파출소로 쫓아가 항의하니까 나를 뒷문으로 데리고 나가더니 기죽수갑을 채운 채 얼굴에 가스를 뿐렸다. 이를 뒤, 파출소장의 사과를 받기 위해 다시 파출소를 찾아갔는데, 잠시후 세 사람이 나타나 차에 태워 싣고 갔다."

◇ 93년 3월 입소한 김재성(58) 씨의 경우- "후배를 만나러 천안에 내려갔다. 서울로 올라오는 표를 미리 끊고 내려갔는데, 집(경기도 이천)에 들리기 위해 표를 환불하러 창구에 갔다.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직원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때 경찰관이 나타나 '잠깐 이야기하자'며 역전 파출소로 데려갔다. 신원 조회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세 사람이 나타나 차에 싣고 데려갔다." 이 씨와 김 씨는 모두 "끌려갈 당시 술은 입에도 대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닥치는 대로 '단속'이 이뤄졌다는 주장은 직접 '단속'을 다녔던 김영화(58·원생) 씨의 진술과도 일치된다. 김 씨는 "단속 과정에서 신원확인 절차는 없었다"며, "일단 원장 지시로 단속을 나가면 '저거 실어'라는 말에 따라 실어 갔다"고 밝혔다.

(2) 입소 심사

보건복지부가 정한 '생활보호사업지침'에 따르면, 관할 관청은 일단 시설에 들어온 부랑인에 대해 상담을 실시해야 하며, 종교인, 사회복지전문가, 의사, 교육자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연고자, 사회복귀 가능성 등을 검토해 입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설의 장에 대해서도 월 1회 이상 원생과 상담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억울한' 입소자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양지마을과 연기군청측은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뿐더러, 거기엔 고의적으로 '의무'를 저버린 혐의도 짙어 보인다.

대다수의 원생들은 "군청 직원과 말 한 마디 나눠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원장과도 면담 한 번 해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원생도 있다. 또한 상담을 실시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입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생들에 따르면, 군청 직원이나 원장과의 상담 내용은 '주소와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또, 상담 과정에서 "형체와 보호자가 있으니 연락을 취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도 "알겠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기군청측은 "입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는 질문에, 뚜렷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했다. 올해 입소한 윤석만(36) 씨는 "상담을 한다면서 시종 육박만 지르는 등, 군청 직원은 양지마을을 위해 일하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시설을 지도·감독해야 할 관할 관청의 책임방기는 이같은 인권유린을 오히려 조장하는 결과를 빚어왔으며, 나아가 시설과 관청이 서로 유착되어 있다는 의혹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3) 퇴소 절차와 심사

일단 양지마을과 송현원에 들어온 원생이 퇴소심사를 거치거나 보호자와 연락하여 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수용된 원생의 상당수가 5년, 10년 이상 장기간 수용되었다는 점이 뒷받침해준다. 원생의 퇴소와 관련, 보건복지부의 '생활보호사업지침'은 "시설의 장이 원생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해야 하며, 원생 중에 퇴소를 원하거나 사회복귀가 가능한 자를 파악해 퇴소심사서 및 의사진단서 등 관계자료를 매월마다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양지마을이나 송현원에서는 아예 퇴소심사라는 것이 없다. 원생들 가운데 한 번은 커녕, 수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상담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 여럿이었다. 입소심사와 마찬가지로 퇴소심사 역시 엉터리였던 것이다.

(4) 외부와 연락 차단

퇴소심사조차 없는 상황에서 양지마을 또는 송현원을 떠날 유일한 길은 가족이나 연고자가 면회를 와서 헤려가는 것뿐이다. 그러나, 양지마을측은 가족의 면회마저도 밖해하고 가족이 면회 온 사실을 원생에게 숨기기조차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진상조사단과 함께 양지마을에서 나온 이상흔 씨를 비롯, 가족과 연락을 취한 퇴소자들은 보호자들이 면회왔다가 되돌아갔으며, 편지 한통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원측에 분노했다. 이상흔씨는 곧바로 청주에 살고 있는 아버지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동생과 아들이 세 차례나 면회를 갔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이 씨는 양지마을에 있던 동안, 가족이 면회 온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했으며, 면회온 가족들은 “이 씨가 나가서 생활할 수 있을 때쯤 되면 연락하겠다”는 양지마을측의 말만 듣고 발길을 돌렸다고 한다. 이씨는 양지마을에서 생활하면서 투약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또 양지마을과 송현원에선 전화통화가 허락되지 않으며(공중전화 한 대 없다), 편지조차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이나 연고자와의 접촉이 ‘원천봉쇄’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송현원 퇴소자인 김은태씨의 편지는 발송되지 않은 채 상담일지 철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압수된 자료 속에서 발견되기조차 했다.

(5) 퇴소자 명단 조작

심지어 양지마을은 퇴소하지 않은 원생을 서류상에 퇴소자로 기록해 두기까지 했는데, 이는 퇴소시키지 않고 맘껏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문병기(41) 씨와 송만성(48)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귀가’ 조치된 것으로 서류상 기록되어 있으나, 지난 20일까지 양지마을에서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씨는 양지마을에서 미싱기술을 전수해 온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진상조사단이 다녀간 이후인 20일 갑작스럽게 ‘귀가’조치됐는데, 이에 대해 문 씨는 “명단에 없기 때문에 풀어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같은날 퇴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손동수(30) 씨는 지금까지 양지마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영한(20·서류상 94년 3월 14일 귀가), 김대역(16·94년 4월 7일 연고귀가)씨 등도 서류와는 달리 모두 양지마을에서 생활중이었다.

(6) 불법적인 인원 이동

퇴소자 중 이종학씨의 경우나 탈출자인 박영섭씨의 경우는 대전의 자강원에 입소하였다가 이사장 노재중의 눈에 띠어 양지마을로 오게 된 경우다. 즉, 노재중은 노동력이 있고, 기술이 있는 부랑인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시설로 이동하여 노동에 투여한다. 이에 따라 자강원 원생과 송현원 원생이 가방 등지의 공장에 취역을 하며, 반대로 양지마을 원생들이 자강원 신축공사에 투입되기도 한다. 자강원에는 20~40명씩이 신축공사를 위해 나가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노재중의 소유인 한일병원에도 양지마을의 인력이 나가서 잡일을 하고 있다고 퇴소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한편, 양지마을측은 보건복지부 특감이 시작되기 직전인 명단에 없는 문 씨와 송 씨를 풀어준 데 이어, 20일 양지마을에서 생활중이던 송현원과 자강원(대전 부랑인시설) 소속의 원생들도 각자가 속한 시설로 돌려보냈다.

7. 폭행 및 성폭행 의혹

양지마을과 송현원은 중층적인 폭력구조가 고착되어 있다. 쳐고 경영진부터 폭력을 원생들을 굴복시키려 하기 때문에 오로지 힘있는 자만이 군림하는 악육강식의 세계에 길들여지게 된다. 많은 원생들은 구조적인 폭력을 회피하기 위해 동물적인 본능으로 생존하는 법을 배우며, 이에 따라 점차 인간적인 존엄성은 사라지고, 희망을 잃고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이런 폭력은 최근 퇴소자의 증언에서 확인되듯이 목숨을 건 폭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럴 경우 많은 퇴생이 따를 것은 분명하다. 인간을 강제로 감금하고, 폭력으로 굴복시키려는 그 어떤 것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1) 폭행 사례

① 사례 1

송현원의 정대영씨는 92년 3.15사건 때 탈출했다가 잡혀왔는데, 독방에서 노재중으로부터 봉등으로 한 시간동안 셀 수 없이 맞았다. 노재중의 지시로 직원인 인철기가 빨간색 고무장갑을 끼고 고추가루를 눈에다가 비볐다.

② 사례 2

양지마을의 이상흔씨는 94년 11월 18일, 오후 6시15분부터 9시 20분까지 구 F 동하 생활실 안에서 다른 원생들이 보는 앞에서, 원장 박종구로부터 머리를 짙ственно 깎이고, 무릎꿇리고, 가슴을 운동화 발로 거세게 채였다. 뒤로 넘어지니까 얼굴을 발로 차고 그런 이유로 오른쪽 위 어금니 일부가 깨져나갔다. 이빨 치료는 못받았다. 이유는 생활실 친구 강창룡이 적어 준 연락처를 갖고 있는 것이 발각된 때문이다. 강창룡과 김종두도 같이 머리가 깎였다.

③ 사례 3

송현원 정동원씨가 당시 양지마을에 파견나가 있던 91년 9월경, 박종구와 직원 김기섭(당시 양지마을 소속)에게 도망가려 한 적도 없었는데, 도망을 모의했다며 낮 오전 9시부터 11시30분까지 두시간 반동안 등공 사무실과 독방 앞 마당에서 박원장에게 등공 나무로 발목을 맞고, 주먹으로 원쪽 옆구리를 맞고, 김기섭한테는 수없이 주먹과 발로 수없이 맞았다.

④ 사례 4

손기섭(양지마을 상담 주임)은 원생들이 하나같이 죽여야된다 할 정도로 원성이 자자하다. 박종문(현재 교도소 복역중)이 97년 8월중순경, 박종문의 이삿짐을 다 압수하여 온 것에 항의하자 많은 원생들이 보는 앞에서 때리는 데 샌드백 치듯이 40분을 계속 때렸다. 몸과 등허리가 안티프라민을 바를 수 없을 정도였다. 박종문은 이튿날 가스통 3개에 불을 붙여 폭발시켰다. 이 사건으로 가스실 천장이 무너져 내렸고, 소방 물탱크가 불탔다.

⑤ 사례 5

송현원 남대현(56)씨가 97년 5월경, 지하실에서 작업중 이성찬 원생이 황정숙 여자 원생의 목을 잡고 땅기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자 진감독에게 발각되었고, 이에 진감독이 남씨를 때리려 하는 것에 되받아치려 해서 진감독이 노총무에게 전화했다. 노총무가 와서 “너는 왜 진감독 말을 순응하지 않고, 반항하느냐”면서 “너 독방에 들어갈래, 빠따 맞을래?” 하여 빠따 맞는 것을 택했다. 그 뒤 가슴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⑥ 사례 6.

송현원 심희운(44세)씨는 98년 5월경, 신관 하층에서 생활실에서 잠을 잘 취하지 못하여 커피를 동료들에게 달라는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 언성이 높이며 싸웠다. 이어 심씨는 203호실 유리창 한장을 깼다. 진감독이 알고, 201호실 앞 복도에 끓어앉히고, 주먹과 발로 무수히 구타하였다. 심은가슴, 옆구리를 구타당했다. 병원 입원, 엑스레이 찢은 결과 갈비뼈 두대가 부러졌다.

- 7월 16일 현장에서나 이후 퇴소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 과정에서 폭행 사건은 무수히 많이

수집되었다. 일상적으로 폭력이 난무하는 시설의 문제가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위의 여섯 가지 사례는 대표적인 사례도 아니고, 그 일부일 뿐이다. 일상적인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이니 언어폭력은 말할 것도 없다.

- 이런 폭행 이후에는 반드시 독방에 감금하거나(6년 이상 감금된 경우도 있었다), CP라는 신경안정제를 강제로 투여한다.

(2) 자살사건 및 사망사건(송현원, 양지마을의 경우는 별도 정리)

① 사례 1.

배경선(당시 47세정도), 93년 연초 평소에 생활하면서, “이렇게 사느니 아무래도 포기해야겠습니까.”라고 흥의배, 남대현(현재 송현원 있다)에게 말했다. 당일날 오후 목매 독방에서 목매 죽었다고 하고, 가족들이 현관문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와 시체를 보자고 했다.

② 사례 2.

신용하(오간호사 남편, 46세정도)가 독방 책임자로 근무 당시 배경선 및 김춘태, 정동원, 김기태 등 4명을 20여일 동안 고문(하루 종일 무릎 꿇고 손들고 있는)을 가했다. 손바닥을 당구채로 때리고, 의식 멀쩡하다(현재는 한일병원). 신용하가 뒷꿈치로 허벅지를 짓이김. 담배사건-독방에 담배를 소지하고 들어옴.

③ 사례 3

장현성(당시 40세)씨가 95년 2월초, 유리창을 깨뜨려서 목을 세번 찔러서 자살 기도(김봉희 목격). 평소에 여기서 갇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말하곤 했다. 응급처치도 없이 수건을 원생에게 주면서 탑차에 싣고 조치원 지나서 청주 가다가 죽었다. 쫓아간 원생(김영조, 김창, 식당에서 일함. 현재도 있다). 왜 굳이 청주로 갖는지 모르겠다.

④ 사례 4

임형석(당시 39세 정도), 93년 초여름, 오후에 모포 옥상에서 텔던 중 갑자기 3층 옥상에서 지하실 입구 쪽으로 투신(밑에 콘크리트 바닥). 평소에 비관하다가, 작업을 싫어하고 약을 세게 먹고, 담배는 피워야되는데, 작업을 안 하니까 카드도 안나오니까. 10만원 영치금 왔었는데, 몸이 아파서 작업을 못한다니까, 박종민총무(박종구 동생)이 카드와 담배를 압수했다. 그러다가 며칠후 투신자살.

⑤ 사례 5

곽규환(당시 39세 정도), 93년 2월 독방에서 생활실로 나왔는데, 약을 너무 세게 먹었다. 죽기 전 3일 전에 마누라와 이사장이 독방으로 면회했다. 확인하고 갔다. 생활실로 내달라고 마누라가 원했다. 온몸이 새까맣다. 매일 세끼 CP 300미리그램 92년 7월 입소 때부터 죽기 직전까지 계속 투약당했다.

⑥ 사례 6

양훈구(당시 18세 정도), 94년초,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환자였다. 당시 작업 중에 간식을 뺏으나왔는데, A동 203호실 생활실에서 배가 고프니 빵을 얻어먹다가 급히 먹는 바람에 그대로 숨이 막혀서 죽음. 시체 처리-개미고개. 보호자도 없다.

- 이외에도 특히 송현원의 경우에는 비관자살과 사망사건에 대한 증언이 빼나 나오고 있다.
자살 내지 사망사건의 경우 가족이 시신을 인계해 가지 않는 경우에는 개미고개에 매장된다.
- 사람이 죽으면 염을 전문으로 하는 원생(송현원-문영철), (양지마을-이승훈(도장공))이 염을 하며, 얇은 판에 수의도 없이 넣어서 개미고개에 묻는다. 김영화씨의 증언에 의하면 비오는 날 매장하다가 시신의 발이 빠져 나온 경우도 있었고, 구덩이가 좁으면 그대로 시신을 꾸겨서 매장하기도 했다고 한다.

(3) 성폭행 관련

- 양지마을측은 성폭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성폭행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 직원이 여자 원생을, 원생 간부가 일반 원생을 성폭행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나, 당사자들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현재로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본인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는 추후 공개할 것이다.

- 성폭행을 당하여 임신이 된 경우 산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강제로 고아원으로 보내기도 확인되었다.

8. 강제노역

(1) 양지마을의 경우

1) 작업종류

① 쇼핑백: 작업장-양지마을 F동 1층 환자실, 송현원, 양지요양원, 대전 자강원 등에서도 함.

② 호차: 샷시문 로라, 이사장 처남, 부용산업

③ 볼: 스타, 축구공

④ 가방: 전량 수출. 덕일통상. 가장 많은 인원인 110명 가량이 작업에 동원됨. 가장 수입이 많고 인원이 가장 많고 여자 포함. 유일하게 야간작업이 심한 부서.

- 작업반장: 진종식->타 부서장보다 가장 원생(작업자)을 가혹하게 작업 강요. 이사장으로부터 가장 신임이 두터움.

- 사장, 고과장(실제 인물, 이전에 주임이었기 때문에 고주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현재까지 부름), 임대리가 있음.

⑤ 자전차: 영원산업. 세발 자전거, 두발 자전거 등 어린이용 자전거 생산, 프레스 작업시 부상이 많이 생김. 권영노 사장은 전 형사출신이라고 하고, 한나라당 청년회장 이라고 함. 윤상무, 공장장(영원산업), 분채실(도장) 담당, 감독이 있음.

⑥ 자동차공구백: 부용산업, 기아자동차 납품(호차와 업주가 동일인임).

⑦ 예비군: 원내 모든 잔일을 처리

⑧ 영농: 가축 및 농사

* 매년 한번씩 작업동의서라는 것을 미리 인쇄된 종이에 성명과 엄지손가락 직인을 강제로 받고 있음. 거부할 수는 없다. 아마 감사에 걸릴 것을 우려해서일 것임.

* 양지마을의 경우는 노동력이 있는 경우만 수용한다. 노동력이 없는 경우 앉아서 쇼핑백을 만든다. 이와 같은 것은 송현원이나 양지요양원에서도 한다.

* 야간작업, 임업은 별로 없으나, 철야작업 했던 적도 있으며, 하루에 14시간, 16시간 등의 연장작업을 한 적도 많다.

2) 노임

① 한달 3천원에서 8천원 정도의 노임을 받는다. 현금으로 받지 않고, 카드를 이용한다.

② 노임 등급

- 3, 4천원; 쇼핑백 하등급

- 5천원; 쇼핑백 중간

- 6천원; 쇼핑백 최고

- 7천원; 쇼핑백 리더

- 8천원; 일반 부서

*여자는 6천원이 최고이나, 박영한씨의 경우는 미성 기술이 뛰어나서 7천원을 받는다.

* 실장은 1만 3천원을 받았다.

* 서무 1만원

* 살림자 2만 5천원~3만원

③ 적립금: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 박영섭씨의 경우 96년 가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약

1백만원이 적립된 것으로 되어 있었다.

(2) 송현원의 경우

1) 작업공정

- 쇼핑백은 본관 지하실(보일러실 개조, 93년경), 총 182명(남자가 약 70%). 96년도에 월 80만~90만장까지 생산. 최근에는 60만장 정도. 정신없는 사람도 이 작업을 시킨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다 시킨다.

- 2층 강당-타공작업, 끈 매달기 작업
- 지하실에서 내려서 마무리단계 비닐 포장 및 박스 포장, 상차 출고.
- 가방일과 병행, 가방 마무리작업-실밥 다듬는 것(시아게) 비닐 포장, 박스 포장 마무리, 출고, 양지마을 등 여러 곳에서 오는 것으로 암.
- 지하실. 포장 여자 20명, 남자 12명 정도
- 신나통과 휘발유-각종 이물질 제거용. 하루에 20리터 들이 세통 정도 소비.
- 작업강도-바쁠 때는 작업에 익매이다 보니 지쳐 있다.

- * 외역-양지마을이나 자강원 등에 나감.
- * 가방봉제 7명, 등가구 1명, 영농 1명 등이 송현원에서 상시적으로 파견되어 있었다.
- * 노가다 일이 있을 때는 수시로 지원나가게 됨.(양지마을, 자강원, 원명학교, 신탄진 한일병원, 대전 노인 치매병원 등)
- * 작업장에 먼저 많다. 먼저 제거작업 거의 안 한다. 환풍기 하나
- * 작업동의서에 강제로 지장을 찍게 한다.

2) 노임

- 카드나오기 전에는 하루 담배 10개비씩 줌(솔), 전선 껍데기 까는 사람은 8개비
- 카드가 92년 11월경부터 시행되었는데, 작업 안 나가면 안 나옴.
- 월 지급액 A급-4천원, B급-3천원 여자는 2천원도 있었다.
- 현재는 6천원-1만1천원(일반원생), 실장은 1만3천원, 감독은 3만원씩 받는다.
- 적금 확인은 97년도 2월초 복사한 서류에 지장을 찍는 것으로 확인한 적이 있다. 통장은 보지 못했다. 정동원씨의 경우 7년간 일한 적금이 34만원이었다.

9. 의료문제

- 양지마을의 경우 투약여부를 오간호사가 결정한다. 그가 간호사라고 해도 처방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이는 불법이다. 또, 약의 투약을 정벌의 한 형태로 사용한다. CP를 강제로 먹이게 되면 눈동자가 풀리고, 졸음이 오며, 힘이 빠진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 송현원의 경우도 촉탁의가 한달에 한번 수회하는 정도이며, 실제 약을 짓고, 분배하는 것은 간호사들도 아닌 간부원생들이 한다. 더욱이 정신질환자가 이를 맡는 경우도 있으므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심지어 투약 여부, 약의 양을 결정하는 데는 전문의나 간호사 등 의료전문인력의 판단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장, 원장 등 직원들의 판단이 우선된다. 이는 명백히 위법이다.
- 의료보험료를 착복하기 위한 여러 의혹이 있다.

- * 의료문제는 정확한 확인과정에 있으며, 확인과정을 거쳐서 불법의료행위들을 밝혀야 한다.

◇ 염훈(98년 7월 27일 퇴소자)씨의 증언: 양지마을의 간호사가 오명영이라고 보통 오간호사라고 사람들이 부르는데, 오간호사는 정식 간호사도 아님에도 자기 맘대로 처방을 하고, CP 투약을 심하게 해서 사람들 여럿 못쓰게 만든 장본입니다. 본인은 양지마을 수용 기간 중 혈압 약을 계속 먹었는데, 위낙 약을 독하게 지어 주었습니다. 오간호사는 예를 들자면 윤창수와 같은 경우는 등

치가 크고(위탁자) 작업장에서 조장한테 불봉제 나가는 사람인데 심하게 다루니까 쪽가위로 조금 덤볐다는 이유로 오간호사가 CP를 많은 양을 투약시켰습니다. 입소 직후부터 봤는데 나올 때까지 점점 양을 늘여서 투약하여 윤창수는 손이 텔덜 떨리고 힘을 전혀 못쓰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처음 입소 때에는 손이 떨리는 증세는 없었습니다. 신태영은 전주사람인데, 다리 장단지에 장미문신이 요란하게 생겨져 있고, 등치가 큽니다. 그 사람도 CP를 많이 먹여서 계속 손을 떡니다. 이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손을 심하게 떠는데 이런 사람들은 모두 CP를 먹인 것입니다. 약을 타먹으려면 보고전을 내야 하는데, 자기한테 고분고분하지 않거나 맘에 안 들면 죽는다 해도 병원에도 안보내 줍니다. 정 안되어서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야 병원에 보냅니다. 병원에 갔다오면 증세가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됩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이미 시기가 늦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전차에 있던 이정현은 다리가 몹시 아파다고 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다리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부터 배까지 절개, 대수술했습니다. 그래서 몇달 있다 왔는데, 얼굴이 가죽만 남았습니다. 같이 퇴소한 박상식이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아무리 죽는다고 해도 매일 우는 소리한다고 하면서 병원을 안보내줍니다. 자기 마음에 안드는 사람한테는 감기약 하나 주지 않는 피도 눈물도없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한일병원 4층에 입원해 있으면서 목격한 참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9일 병원 입원 후 병원 실태를 본다면, 오히려 양지마을 보다도 더한 지옥입니다. 쇠창살이 되어 있고, 양지마을 몇번 드나든 사람인 최동연을 실장으로 앉혀놓고,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산소호흡기를 제거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옆 침대 원기석(50대)이가 죽을 사라릉으로 보였는데, 몸이 하도 쇠약해서 정확히 여칠인지 모르지만, 오후 4시쯤 산소호흡기를 최동연이가 맘대로 제거했습니다. 밥을 4시30분 쯤 먹는데, 앉아서 죽어갔고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부랴부랴 간호사들이 오고, 의사가 오고, 응급처치를 했지만, 못 살아났습니다. 병원 직원 유계장, 염기사라는 사람하고 밤이면 최동연에게 술을 사다줍니다. 운동기구 역기까지 갖다주고, 수시로 커피, 담배, 음료수 과자 등을 제공해주고, 본인 생각에는 이 두사람의 사주를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사를 실장으로 바로 앉힌 사람이 노재중입니다. 병원에 있을 때 죽어나간 사람이 손명순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배에 복수가 찬 사람인데 최동연이가 땅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면서 침대에 던졌습니다. 최동연은 걸을 수 있으면서도 안 걷는다고 하면서 최동연이가 땖고, 그 다음날 저녁밥 먹을 때쯤 죽었습니다. 신경장원이라는意义上 온 성명불상의 남자는 산소호흡기를 대놓고 응급처치를 하더니 들어온 지 한시간만에 죽었습니다. 한 번은 직원이 밤 10시경에 최동연이보려 직원이 빨리 장갑 끼고 나오라고 하여 죄가 갔다와서 하는 말이 오늘 또 한 마리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입원해 있는 사람 중에 사망 직전에 있는 사람들은 최동연에게 목을 수차례 챕캑 숨넘어가는 소리를 지를 때까지 조르고, 목에 시커먼 손자국이 있고, 시시각각으로 무수히 구타당한 송광진, 얼굴과 가슴에 새파랗게 멍이 들고 지금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76세 황의탁(송현원 소속), 팔이 오그라진다고 하면서 침대에 발과 팔을 묶어놓고 가슴등을 무수히 구타당한 40세 가량의 주중평, 무수히 많이 맞아서 가장 먼저 죽기 쉬운 40세 가량의 전철중, 안펴지는 다리를 펴준다고 하면서 침대 위에 놓고 허벅지에 올라서서 막 죽는다고 고함을 질러도 막 밟아대서 양쪽 허벅지가 새파랗게 멍이 들었고 가슴 목 부위에 멍이 든 자국이 많고 머리에 터진 자국도 있는 75세 가량된 김광배, 대령 예편했고 딸이 위탁했다고 하는데, 안면을 구타하고, 네가 대령이라고하면서 구타를 당한 탈수증, 일사병 환자로 약 70세 되는 정의식이라는 남자 등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양지마을 소속입니다. 최동연이 구타하는 시간이 주로 오후시간과 저녁에 합니다. 간호사들 눈을 피해서 하는데, 간호사들나 의사도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요일(7월 26일) 저녁, 술이 만취되어 가지고 6층에 올라가서 50세 정도되는 이덕수(자강원)라는 사람을 얼굴을 때렸습니다. 코피가 터졌는데, 최동연이가 사과하려 다니고, 저녁에 가서 술도 갖다 주고 했습니다. 이사람은 본인이 퇴원할 때 같이 나왔습니다. 죄는 가족들이 와서 데려오면 나가는데, 그렇지 않고 나가면 다 죽여버린다고 평소에 말하고, 가족들과 제 자식을 자신의

손으로 모조리 치치해 버리고, 일을 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 이병운씨의 경우: 직접 겪은 교통사고는 93년 가을(9,10월)경, 양지마을에서 대전 대화동 소재의 한일병원 1층부터 5층까지 개축공사를 하고 돌아오던 중 신탄진 전폐청 앞에서 조치원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가 나서 1명이 사망, 6명 중상을 입는 큰 사고였습니다. 본인도 중상을 입었는데, 양쪽 다리가 절이면서 마비증세가 왔습니다. 대전의 성명불상의 병원에 당일 입원하였다가 당일로 한일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일주일 간 입원치료하였습니다. 그후 다시 양지마을로 갔습니다. 양지마을로 들어간 다음에 합의금 조로 10만원씩 두 번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합의금 20만원을 받고 끝났습니다. 현재도 그 후유증으로 나리에 마비증세가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은 송성근이라고 살림하던 원생 간부였는데, 그 이후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당시 송성근과 살림하던 여자는 양지마을에서 집으로 보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 김제한씨의 경우: 본인은 사회에서 왼쪽 다리 대퇴부를 다쳐서 일을 심하게 하면 후유증으로 통증이 옵니다. 이런 다리 후유증 때문에 97년 5월 환일병원 대화동 한달간 입원했습니다. 한달 동안에 원생 4-5명 이 계속 죽어나갔습니다. 당시 같이 입원하였던 실장 중의 한 명이었던 김대성씨가 하는 1년 동안 6-70명 죽어나갔다고 했습니다.

죽어나갔다고 했습니다. 원생들이 입원하는 곳은 대전 대화동 한일병원 6층입니다. 거기에 감금시켜놓고 치료를 합니다. 6층에는 천성원 직원 밖에 일반인이 접근을 못합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병동 전체에 철대문이 있고, 방마다 출입문이 철문이고 바깥에서 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있고, 창문 안쪽으로 철창이 여닫이 식으로 있고, 이 철창을 열쇠로 채워놓았습니다. 지난해 6층에 40여평 되는 공간에 29명이 있었습니다. 침대, 텔레비전 한 대가 있었고, 칸막이는 결핵환자 격리를 위해 하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결핵환자 숙리를 규제하기 위해 한 달에 4명이었는데, 올해 2월에 다시 다리 후유증으로 병원 가서 한달 가량 있었는데, 한달에 4명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가서 보니까 원생용 병실을 4층에 또 하나 만들었다. 6층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환자 돌보는 원생을 하나씩 배치해놓았고, 일보는 원생들에게 한달에 1만원씩 주었습니다. 올해 2월에 입원했을 때 바로 내 옆 침대에 있던 사람이 죽었는데(이름은 모름), 항문에서 하혈을 심하게 하다가 사흘만에 죽었습니다. 과장이라는 사람이나 간호사들도 “수술만 하면 괜찮다. 살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올 2월 한달간 입원했을 때도 4명이 죽어나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분이은 진통제 먹고, 주사 놓고, 쉬고, 물리치료 하는 정도의 치료를 했습니다.

10. 비리

- 정부지원금의 착복, 횡령 등이 곳곳에서 의심이 간다. 이런 부분을 자료로 검토중이며, 퇴소자 중에서 이에 대한 상당한 실마리를 갖고 있는 이도 있다.
 - 노동력의 착취에 의한 임금 착복은 그동안 양지마을과 송현원을 비롯한 천성원 전 기관 안에서 진행된 작업을 따져보면 금방 드러나게 될 것이다.
 - 이런 비리 관계는 노재중 이사장과 각급 공무원들의 유착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감사도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퇴소자들이 증언하고 있다.

◇ 유경수씨의 증언: 양지요양원 건물(7억평ガ, 인건비는 5억정도)라고 하나, 실제로는 인건비를 모두 원생들에게 시켰고, 인건비를 착복하였다. 노재증 소유 땅이 대평리에 한3만평정도 있고, 이 곳에 작업을 나가게 하여 알게 됨(10여명이 벌목등 작업). 원생이 사망하면 적립되었던 돈은 가족에게 반납되지 않음. 1년간 원생들 인건비는 10억이 떨어지고 이를 착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건축비,인건비는 정상노임으로 청구하고, 실제로는 원생들을 시켜 일하게 함으로써 노가다(일용노동)비용을 1년간 10억원정도 착복함--16년간에 걸친 착복을 생각하면, 착복금액은 어마어마하다

*선거때가 되어도 선거는 꿈도 못 꿈--수용자들도 모두 부재자투표는 할 수 있으나 보는데, 선 혀 선거에 참여하지 못함, 다만 전체원생중 40명정도는 투표에 참가함(주로 인근 마을에서 위탁시

친 사람이나, 처음에는 원생이었다가 충성후 주소지를 양지원으로 옮긴 사람)--박종구, 노재중은
그것으로 누구에게 투표하라고 요구함

*약값비리-약값,의료비,진료비중 거의 반은 착복함, 약사자격도 없는 송현원의 간호보조들이 함부로 약을 제조하여 줌. 필요한 약의 돈을 타낸 후, 실제로는 품질이 더 나쁜 약만 사고, 나머지는 착복함. 송현원,양지원등 1,000명분으로 1달에 1억정도 약값으로 잡히는 것으로 안다.(1인당 약값 의료비 진료비명목으로 10만원정도계산잡음)

*원생이 죽으면, 군에서 장례비30-40만원정도 나오고, 단속되어 수용될 때 소지중인 금품은 보관명목으로 가지고 있다가 착복, 노임통장명목의 돈도 사망하면, 착복한다(상속인에게 연락할 때, 사망자의 부랑아취급행태위주로 알려 줘 아예 상속인들이 찾아올 생각이 들지 않게 함으로써 연락의 가능성은 차단하여 착복한다)

*1달에 식비,부식비,피복비등 16만8천원,약20만원정도 나오는데, 1,000명분중 거의 절반을 착복금으로 유통을 보면 거의 사람이 면을 음식이 아닐 정도로 엉망이다.이는 부식비 착복의 반증이다.

*영원산업:사장 권 모사장-현재 한나라당 연기군 지구당 당원 겸 한나라당 청소년 어떤 분과 위원장. 양지원내 아동용 쌩쌩카, 세발자전거 발주처 사장인데, 양지원과의 거래를 통하여 충분히 양지마을의 비리를 알고 있음에도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원생들의 노동착취로 인한 상품을 생산하고 거래하였는데, 매달 500만원정도를 양지원 사무실에 제공하는 대가로 염가의 노동력으로 물품을 생산다. 영원산업에서 일하다가 산재사고를 당하여 불구자가 된 원생도 많다. 보상조치도 없었다.

◇윤석만씨의 증언: 건축공사비 착복이 많고, 공사시 철근이 매우 엉성하게 부실공사되는 것을
아는데, 이런 식으로 공사비 착복이 많은 것 같다.

◇ 김인수씨의 증언: 불공장이나 호차공장에서 작업을 하며 할당받은 양에 대하여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씩 양지마을에서 받아 착복하였는지는 모름.

◇ 이종학씨의 증언: 연기군청에 근무하는 이주사라는 담당공무원은 양지마을의 실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비호하기에만 급급할 뿐 아니라 양지마을의 원생들에게 욕설까지 하며 일하고 강요하는데 앞장서서 원생들의 원한을 사고 있는데 본인이 1994.12. 양지원으로 입소할 때 의무실에서 “너는 이제는 못 나가”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결국 위 이주사는 양지마을 이사장 노재중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으로 검은 유착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김영화씨의 증언: 공사를 하게되면 '타일, 돌, 설비' 외에 나머지는 원생이 다 일을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은 이사장에게 공사비 670,000,000원이 나오는데 남는 돈은 무엇을 하느냐고 물으니 "초등학교 다니는 애 3명 대학가는 기금이다 예금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공사시에는 노이사장이 공사업자에게 원생에게 연락을 취해주거나, 담배나 돈 주면 공사비 받아갈 생각 하지 말아라고 하여 원생이 공사업자들을 통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 자재 공급 업체에게는 도장 찍은 영수증 달라고 하여 공사비를 과장하고, 양지원 요양원에는 지하실이 있으며 비밀 서류창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10년간 공무원이 준공검사 하러 오는 것을 못보았으며 어떻게 준공이 나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 염훈씨의 증언: 감사나올 때는 자강원 소속을 양지마을에서 일을 시키다가 감사 나오는 것을 먼저 알고 빨리 빠돌리는데, 자강원에 감사 나오면 양지마을로 빠돌리고, 양지마을에 왔던 사람들은 자강원으로 데려가는 식으로 합니다. 그것도 안되면 구석진 식당 지하 창고 같은데 숨겨서 그 상황을 넘깁니다. 자강원, 송현원, 양지마을 소속 사람들을 수시로 옮겨가면서 작업을 시킵니다.

◇ 이병운씨의 증언: 외역반은 15~40명 정도가 팀이 되어 움직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노가다 기술들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사회 기술자를 썼습니다. 노동한 별도의 임금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 김제한씨의 증언: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양지마을의 뿌리를 확 뽑기 위해서는 노재중과 양지마을 책임자들을 사법처리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군청 직원들도 사법처리해야 합니다. 군청 직원이 노재중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군청 직원은 오면 반말 지껄이로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 보고도 "네 애비 뭐하나"고 그립니다. 군청 직원이 와서 퇴소 심사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박원장을 처음 만날 때 군청 직원이 같이 들어와 경위를 묻고, 주소를 묻고는 되었다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외에 만나서 퇴소심사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사람들이 40명 가량 나갔는데, 면담을 3번 신청을 했는데 계속 거절당했습니다.

◇ 김용출씨의 증언: 소문에(원생들) 이사장이 논산 구기지 신생원 뒷산을 차명 구입했다고 하고 양지원생들이 그곳에 가서 일한 적이 있다.

◇ 정선우(정태호)씨의 증언: 소문으로 군, 도청 직원이 지원금을 횡령하고 나누었다고 하는 소문이 양지마을 내에 돌았습니다. 물증을 우리 입장에선 알 수 없는 사실입니다.

◇ 김도수씨의 증언: 나올 때까지 계속 노가다 일을 했는데,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 일명 개잡부로 일시키는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노가다 일을 하면서 신축한 건물은 폐수처리장, 부원장과 오간호사가 기거하는 관사(곁에는 슬레이트 지붕인데 안에는 완전 호화판), F동, 현재 신축공사중인 양지마을 담 안쪽의 건물, 송현원 신축중인 건물들을 작업했다. 신축중인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개축이라고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산업 폐기물(가방 전선줄, 생활실 쓰레기 등)을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고, 물을 끓인다는 평계로 전선줄을 약 7~8톤 태워서 흙에다 범벅을 해서 반출을 했다. 반출한 장소는 모른다. 그것은 항상적으로 하는 것이다.

- 끝 -

사회복지시설(양지마을, 송현원) 감사결과 보고

새정치국민회의 이성재의원외 48명과 한겨레 신문 등 일부언론에 보도된 양지마을 및 송현원에서 원생들에 대한 인권유린 및 강제노역 등의 문제점 지적에 따라 실시한 감사 결과임.

□ 현황

시설명	설립일자	수용인원	종사자수	시설장	이사장	위치
양지마을	'83. 2. 8	475(247)	17	박종구	노재중	연기군 전동면 송성리
송현원	'86.12.13	261(322)	17	박정자	노재중	"

※ ()는 현원

□ 감사개요

○ 기 간 : '98. 7. 22 - 7. 29 (8일간)

○ 감사반 : 4명

- 정신보건과 5급 송희순
- 복지정책과 6급 이경재
- 생활보호과 6급 송한목
- 구강보건과 6급 박영수

○ 감사내용

- 강제수용, 폭행 등 시설내 가혹행위 및 강제노역
- 정부보조금, 원생수익금 착복 및 유용여부 등
- 언론보도 및 이성재의원 지적사항 등

□ 분야별 지적사항

1. 건축공사분야

(1) 건축공사 노임 지급 부적정

< 지적내용 >

- 양지마을 부대시설공사를 위하여 '97. 8.29 대도건설(주)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원생을 대도건설이 시행하는 공사장에서 일 하도록 공사노임계약을 '97. 9. 8일 체결하였으나,
 - 계약조건은 기술공의 경우 3등급 (A : 15,000원, B : 10,000원, C : 5,000원) 보조공은 2등급 (A: 5,000원, B: 3,000원)으로 분류하고 공사장에서 원생들이 일을 시작한 것은 '97. 2월부터이며, 개인별 실적은 점호부에 의거 매일 관리하고 있음.
 - 그후 공사진행상황에 따라 설계비 31,850,000원('98. 1. 5일 입금) 및 공사대금 51,529,000원('98. 1.6일 입금)을 대도건설에 지불하고 대도건설로부터 '97.9-12월까지의 원생 인건비 명목으로 4,200,000원을 '98. 1. 3일 미리 수령하여 '98. 1. 7일 원생 개인별 구좌로 입금 조치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① '97.9-'98.7.23일까지의 양지마을 공사노임 14,995,500원중 '97. 9-'97.12월까지의 공사노임은 2,423,000원임에도 불구하고 '98. 1.3일 4,200,000원을 대도건설로부터 수령하여 '98. 2-'98. 7월 까지의 벽돌 작업공 5명, 미장공 1명의 노임 1,700,000원으로 미리 지급한 사실이 있는 반면에 2,500,000원은 목공 7명, 철근공 2명, 잡부 2명의 노임으로 작업일수와 다르게 지급함으로서 10명의 노임 45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② 개인별 지급액이 실제 작업일수보다 최고 200,000만원을 초과지급한 사실이 있는 반면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최고 632,500원을 적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③ 공사노임 지급에 따른 원생들의 등급을 구분하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노임 지급방법에 대한 절차 및 지급시기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 송현원 공사에도 양지마을 원생들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키고 '98. 1.6 대도건설에 43,68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7. 9-'97. 12월까지의 원생 인건비 1,45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음.

2. 종사자 채용분야

(1) 종사자 채용관리 부적정

< 지적사항 >

- 부랑인 선도시설 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 선도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등 상담요원, 생활지도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충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직원 17명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단 한명도 없는 등 전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및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임.

(2) 직원채용 부적정

< 지적사항 >

-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은 경비업무 등 단순노무직이라고 하더라도 담당직무 수행능력이 있어야 하고 수용된 원생과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함에도
 - '91. 1. 1부터 양지마을 (원장 : 박종구)의 경비로 채용된 이성우 (55. 27일생)는 독자적으로 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실제로 원생들이 기거하는 생활실에서 외출·외박이 자유롭지 못한채 원생과 동일한 생활을 계속하여 왔을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지급되는 봉급이나 통장에 예치된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조차 모르면서 시설에서 예금통장을 보관·관리하고 대리집행하는 등 직원으로서 부적격한 자임에도 인건비가 낮아 외부에서 직원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사유로 원생 대상을 직원인것처럼 채용하여 '91. 1.1부터 '98. 6월분까지 총 51,757,350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보조(국고 70%, 지방비 30%) 받아 집행한 사실이 있음

3. 입·퇴소 분야

(1) 입소관리 부적정

< 지적사항 >

- 부랑인 선도시설 운영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장은 시설에 입소된 자(원생)에 대해 월1회이상 상담을 실시하여야 하며, 원생중에 퇴소를 원하는 자 또는 사회복귀가 가능한 자를 파악하고 매월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사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에도
 - 양지마을 (원장 : 박종구)에서는 입소원생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입·퇴소 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심사요청 실적이 전혀없이 원생을 최장 15년 4월에서 평균 3년 4월까지 입소시키고 있는 사실이 있음.
 - 또한 원생의 자율적인 사회적응 능력 배양을 위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정기적인 외출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선도요원, 실장, 반장 등 소위 자자조직의 간부급에게만 외출을 허용하고, 작업장 투입원생들은 전혀 외출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야간에는 생활실을 외부에서 폐쇄하는 등 외부연락과 탈출을 방지함으로써 원생들의 집단퇴소 요구 등 집단행동을 유발토록 한 사실이 있음.

(2) 퇴소관리 부적정

< 지적사항 >

- 부랑인 선도시설 운영규정 제9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 선도시설의 장은 연고자가 원생의 인계를 요구할 때 또는 원생의 사망, 무단퇴소 등 당연퇴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생이 퇴소를 원할 경우라 하더라도 퇴소심사위원회의 퇴소심사 절차를 거쳐 퇴소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 양지마을 (원장 : 박종구)에서는 '96-'98. 7. 22 현재까지 기간중 총27명 ('96 : 6명, '97 : 10명, '98.7 : 11명)의 원생을 퇴소 심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인희망"등의 사유로 시설장이 임의로 퇴소시킨 사실이 있음.

(3) 입소원생 후생복리관리 소홀

< 지적사항 >

- 부랑인 선도시설 운영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는 원생이 자유로운 전화연락 또는 서신연락을 할 수 있도록 공중전화와 우체통을 원생의 사용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충청남도 연기군 (군수 : 홍순규)에서는 관내 부랑인 선도시설인 양지마을(원장 : 박종구)의 경우 그러한 편의시설이 없을뿐만 아니라 원생의 생활실을 야간에는 밖에서 잠그고 바깥은 담장과 철제 대문을 설치하여 평소 원생이 외부와 전혀 연락을 취할 수 없도록 폐쇄 운영하고 있음에도 '98. 7. 22 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시정조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4) 자활사업장 수익금 관리 부적정

< 지적사항 >

- 작업보도결과 발생된 수익에 대하여는 그 작업 보도에 따른 원자재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익전액은 원생에게 노임으로 직접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작업보도결과 발생된 수익금을 배분함에 있어 사업별로 노동 능력 및 실적에 따라 배분하지 아니하고 작업자들의 동의없이 모든 사업의 수익금을 합산하여 노동능력만을 3등급(A, B, C)으로 나누고, 작업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한 소위 식당, 반장, 선도요원 등 생활실 자치 조직요원 총 97명 ('98. 6월 기준 : 식당 19명, 봉사자 20명, 선도 11명, 이발 3명, 실장 등 간부 11명, 원내청소 등 33명)을 포함하여 공동분배한 사실이 있으며,
 - 수익금의 배분은 입·퇴소 등 변동상황을 고려하여 입금 즉시 처리하여야 함에도 '98. 7. 28 현재 가방제작 및 아동자전거 제작의 경우 '98. 4월분까지만 원생에게 지급하는 등 (쇼핑백의 경우 '98. 3월까지 노임지급, 공구가방의 경우 '98. 2월까지 노임지급) 계약업체로부터 입금된 노임 중 총 15,780천원이 미지급된 상태로 통장상 잔고로 남아있는 사실이 있으며 또한 퇴소자의 경우 일부 노임을 미지급된 채 퇴소시킨 사실이 있음.

4. 입소원생 관리분야

(1) 정신요양시설 계속입원심사 청구 미실시

< 지적내용 >

- 충청남도 연기군 관할 「송현원」 정신요양시설 계속 입원심사 청구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정신요양시설 계속 입원심사청구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소기간이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입소시킬때에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와 보호의무자의 계속입소 동의서를 구비하여 시·도지사에게 계속 입소 심사청구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정신과 전문의사의 진단서는 구비하였으나 보호의무자가 계속 입소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계속입소심사 청구후 6개월이 경과한 '98년 7월 25일 현재까지 전계절외 49명을 미청구하였음.

5. 인권침해분야

(1) 폭행

< 지적내용 >

- 양지마을 원생 298명을 설문조사 방법으로 매맞은 사실을 확인한 결과 매맞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98명으로 나타났음.

< 처분요구내용 >

- 조치원경찰서 수사과에서 수사중임.

(2) 성폭행

< 지적내용 >

- 양지마을 원생 298명중 설문조사 방법으로 사실을 확인한 결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 6명이 나타났음.

< 처분요구내용 >

- 조치원경찰서 수사과에서 수사중임.

(3) 퇴소조치미흡

< 지적내용 >

- 양지마을 원생 430명중 퇴소를 희망하는 사람이 273명으로 나 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상담과 적극적인 퇴소조치가 미흡했음.

< 처분요구내용 >

- 퇴소희망자 273명에 대한 상담 및 퇴소심사위원회를 거쳐 187명이 퇴소하고 10명은 연고 귀가하고 8명은 무단퇴소, 18명은 이성재의원이 동행퇴소함.
- 나머지·원생들에 대하여도 특별히 문제점이 없고 퇴소가 가능한 사람은 퇴소시키도록 지시

< 관련기관 >

- 연기군청 (사회복지과)

□ 처분요구사항

1. 감독공무원에 대한 조치

- 사회복지시설(양지마을, 송현원) 1차 감독기관인 연기군청 공무원 문책(충청남도)
 - 법령위반 사례에 상응하는 징계 등 조치

2. 사회복지시설(양지마을, 송현원)에 대한 조치

- 부랑인선도시설 규정을 어긴 사례에 대해 즉각 시정하거나 향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 미지급된 건설노임 및 수익금 등은 정당한 권리를 가진 원생에게 정산해서 적정분배토록 시정조치(연기군, 양지마을)
- 국고보조금, 노임 등의 횡령혐의 등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 등에 고발토록 하며(충남도)
- 사회복지시설(양지마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4호 규정에 의거,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시설장을 교체하거나 법인 이사장의 승인을 취소조치(충청남도)
- 재원중인 사회복지시설(양지마을) 원생에 대해서는 퇴소 희망하는 경우 적정한 절차에 의해 퇴소조치하고 금번 감사적발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수사가 종결된 후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가 끝날때까지 신규입소를 제한(연기군, 양지마을)

□ 향후조치계획

1. 사회복지시설(양지마을, 송현원)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의거 시설폐쇄조치 예정(충청남도)

2. 부랑인선도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개선조치(전국 시·도)

— 각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할지역내 부랑인선도시설(전국 43개 시설)에 대해 다음사항에 대한 실태 조사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와 개선을 취하도록 지시 —

- 입소심사시 연고자 조회, 사회복귀가능성, 건강상태 등을 형식적으로 처리한 사례

- 월 1회이상의 상담 및 필요시의 퇴소심사위원회 운영을 소홀히 하는 사례

- 생활실 등 청문에 쇠창살을 설치하는 등 시설의 폐쇄적인 운영 사례 등

- 원생의 자유로운 전화연락 또는 서신연락을 위한 공중전화, 우체통 설치 여부

- 원생의 사회적응능력과 작업능력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직업 보도사업 실시 경우 수익금배분의 적정성과 통장 등의 불법관리 사례

- 폭행, 감금 등 비인도적이며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사례
- 원생의 자율적인 사회적응 능력 배양을 위한 정기적인 외출 등의 실시여부
- 부랑인선도시설 운영규정 제9조에 의한 퇴소심사위원회 운영을 정기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
- 부랑인시설 원생을 건축공사에 투입하고 노임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있는 사례
- 부랑인선도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요원, 생활지도원에 대한 사회 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채용 여부
- 직원으로서 부적격한 원생을 본인도 모르게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부당취득하는 사례
- 원생 본인이 희망하더라도 퇴소심사위원회의 퇴소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나 심사절차없이 시설장 임의로 퇴소시키는 사례

고 소 장

고 소 인 이 종 학 외 33인

고소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덕우, 차병직, 임영화, 장완익, 이찬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4-8 우민빌딩 503호
전화 02)596-4101 전송 02)596-4104

피고소인

1. 노 재 중

사회복지법인 천성원 이사장

2. 박 정 자

송현원 원장

3. 박 종 구

양지마을 원장

4. 오 명 영

양지마을 간호사

5. 손 기 섭

양지마을 직원

6. 장 병 열

양지마을 총무

7. 노 완 호

송현원 총무

8. 최 정 호

송현원 주임

위 피고소인들 주소 : 충남 연기군 전동면 송성리 산 118-2

고 소 사 실

고소인들은 피고소인들을 다음과 같은 혐의로 고소하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하여 주기 바랍니다.

1. 피고소인들은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의 이사장 및 그 산하 시설의 시설장 및 간호사, 직원들이고 고소인들은 산하 시설인 양지마을, 송현원에 불법감금되어 강제노역을 하는 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입니다.

2. 피고소인 노재중은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을 설립하여 곁으로는 사회복지사업가로 위장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납치, 감금하고 강제노동을 시키기로 결의하고 1983.2.8. 양지마을을, 1986.12.13. 송현원을 설립하여 양지마을 원장으로 박종구, 송현원 원장으로 박정자를 내세우고 위 시설에 직원 10여명씩을

채용하여 지휘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휘체계 밑에 수용인원들 중에서 말을 잘듣는 자들을 충실장, 실장, 반장 등으로 임명하여 수용자들의 자치체계인 것처럼 위장하여 일사불란한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한편 위 노재중은 위 시설들은 외부로부터 철저히 차단하기 위하여 양지마을과 송현원 주위에 높이 3미터의 콘크리트 담장을 세우고 감시용 망루 1곳과 감시초소 3개 및 수용자들의 숙소인 소위 생활실에는 창마다 쇠창살을 설치하고 문을 밖에서 잠글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 놓고 전화나 편지등 외부와의 통신마저 차단하여 마치 교도소와 같은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나아가 수용인들중 퇴소의사를 밝히거나 강제노역을 거부하는 경우 가차없는 폭력을 행사하고 때에 따라서는 정신병자들에게 투여하는 신경안정제를 투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피고소인 노재중을 비롯한 시설장 등 간부들의 지시에 대하여 전혀 반항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적, 인적토대를 갖춘 위에 양지마을에는 쇼핑백, 호차(알미늄 샤시 문의 롤러 바퀴), 축구공, 가방, 자전거, 자동차공구가방 등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송현원에는 쇼핑백 공장을 만들어 놓아 감금된 수용인들로 하여금 위 공장에서 강제로 노동토록 하여 현대판 기업형 노예제도를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이 물적,인적으로 사설교도소와 같은 시설을 만든 후 피고소인 노재중은 양지마을과 송현원의 원장을 통하여 내부적인 운영을 지시하고 대외적으로 시설내의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을 납품할업체와 거래를 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들을 접촉하여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타내 횡령하는 등 위 시설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소인 박종구는 양지마을 원장, 피고소인 박정자는 송현원 원장으로 위 노재중의 지시를 받아 채용된 오명영 등 직원들과 소위 간부원생들을 지휘하여 수용인들을 강제노동토록 하는 등 위 시설을 각 운영하고, 피고소인 오명영은 양지마을의 간호사라는 직원으로 채용되어 위 노재중과 박종구, 박정자의 지시에 따라 반항하는 수용자들에게 신경안정제를 투여하는 역할을, 피고소인 손기섭은 양지마을의 직원, 피고소인 최정호는 송현원의 주임으로 피고소인 노재중, 박종구, 박정자 등의 지시에 의하여 일상적으로 수용인들을 구타하는 등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수용인들을 강제로 노동토록 하는 역할을, 피고소인 장병열은 양지마을 총무, 피고소인 노완호는 송현원의 총무로 강제노역에 의한 임금착취와 국고보조금을 횡령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치밀한 계획하에 일상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4. 피고소인들은 위와 같은 지휘체계 및 물적시설을 갖추어 사설교도소를 설립하고 노동력을 착취할 대상을 물색하여 강제로 감금시키기로 공모하고 1993.3.18. 19:40경 소위 체포조인 원생 3명으로 하여금 천안역전 파출소에서 기차표 환불로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 고소인 김재성을 강제로 봉고차에 태워 양지마을로 납치하여 1998.7.16.까지 감금하는 등 별지 목록의 피고소인 34명을 그 기재 입소일로부터 퇴소일까지 각 감금하였고, 1991.9.경

피고소인 박종구는 고소의 직원 김기섭과 함께 고소인 정동원이 도망하려 모의했다는 이유로 동인을 등공예공장 사무실과 양지마을 독방 앞 마당에서 약 2시간 반 동안 등나무로 발목을 가격하고 주먹과 발로 전신을 구타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전신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5. 그리고 피고소인들은 위와 같이 감금된 고소인 김은태가 1991.4.경 송현원에서 강제노동에 대하여 항의하자 당시 송현원 총무인 한모로 하여금 몽둥이로 온몸을 구타하게 하여 위 김은태로 하여금 약 1주일간 기어다닐 정도의 상해를 입도록 하는 외에 피고소인 손기섭을 비롯한 직원들은 물론 이사장인 피고소인 노재중이 수용자들을 직접 구타하고 소위 원생간부들을 시켜 일상적으로 수용인들에게 폭력을 행사도록 하는 한편 평소 수용인들에게 욕설과 함께 위 시설에서 평생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하여 물리적으로는 물론 심리적으로도 수용인들로 하여금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하여 고소인 김은태로 하여금 1989.6.경부터 1998.7.16.까지 쇼핑백 공장 등에서 강제로 일하게 함으로써 그 임금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별지 목록 고소인 34명으로 하여금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목록에 기재된 기간동안 강제로 노동력을 제공토록 함으로써 그 임금 총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6. 나아가 피고소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1990.2.1 고소인 조성구로 하여금 강제로 자전거공장에서 작업토록 하던 중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프레스에 왼손이 깔려 왼손의 손가락 두마디를 절단하는 상해를, 1993. 여름 신입방에서 성명불상의 총실장으로 하여금 당일 강제로 끌려온 이병운에게 건방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구타하여 윗니 전체가 빠지는 상해를, 특히 피고소인 오명영은 1996.10.26.경 탈출하였다가 다시 잡혀온 고소인 김봉희에게 강제로 신경안정제(cp)를 약 1년 3개월간 투약하여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손발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상해를, 1995.일자불상경 양지마을에서 나가기 위하여 교도소라도 가겠다는 각오로 노래방 기계를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고소인 허길선에게 신경안정제를 강제로 투여하여 정신장애와 탈모증상의 각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7. 결국 피고소인들은 형법제278조의 특수감금, 278조 1항의 감금치상죄, 334조 2항의 특수강도, 337조의 강도치상죄를 범하였다 할 것입니다. 법리상 피고소인들이 고소인들과 같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강제노동을 하도록 한 것이 강도죄에 해당되는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도소를 방불케하는 물적 시설과 인적 구성을 갖추고 외부와 철저히 격리한 채 야만적인 구타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공포분위기에서 수용인들이 항거불능의 심리상태에 빠졌다는 것은 명백한 것이므로 강도죄의 수단인 폭행, 협박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노무제공이 강도죄의 목적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남는데 강도죄는 재물을 강취한 경우만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성립되므로 강제로 노무를 제공케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명백하여 강

도죄로 인정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한편 이러한 강제노동의 대가로 적게는 월 5,000원 많게는 2만원 가량의 임금을 주었으므로 그 차액이 강도이득죄의 재산상 이익이 아닌가 하는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임금과의 차액을 논하는 것은 노무제공자와의 계약을 전제로 하는 경우 문제삼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근로계약 자체를 인정할 수 없고 항거할 수 없는 폭행, 협박에 의하여 강제로 노무를 제공케 한 경우는 논할 여지조차 없습니다. 설사 강제노동의 대가로 임금 중 일부를 어떠한 형태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강도죄는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며 강취한 재산상 이익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절도죄와 같은 재산범죄에 있어서 소위 불가별적 사후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는 이 사건의 임금지급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대가의 지급이 아니라 감독행정관청의 눈을 속이면서 수용자들의 극한상황에서의 반항을 무마하는 이중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 교활한 범죄수단의 일환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지 강도이득죄의 피해법의 크기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인정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한편 감금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과 유사한 세칭 형제복지원 사건을 내세워 범죄성립이 어려운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형제복지원사건에서 특수감금죄부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하였으나 이는 헌법에 위반된 판결임이 명백합니다. 즉 대법원은 위 형제복지원이 사단법인으로 그 산하 을주사업장 역시 부랑인 선도보호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일부이고 박인근 등 피고인들이 생활보호법 등 관계법령과 부산직할시 재생원조례, 내무부훈령 제410호 등 관계규정에 근거하여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위 형제복지원에 적법히 수용의뢰된 부랑인들을 형제복지원의 적법한 복지시설의 일부인 을주사업장에 수용하여 작업을시키고 이들이 작업장 밖으로 도망하지 못하도록 경비경계를 철저히 행한 조치는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감금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헌법 372항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감금에 대하여 대법원이 적시한 위 생활보호법 등에 정한 사실이 없고 설사 일부 절차적인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상 범죄에 대한 형벌로 징역형 등으로 감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교육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강제노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사법부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 명백한 점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현대판 노예제도, 강제노동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납치, 감금, 폭행, 상해 등은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헌법과 법률체제상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국민으로 하여금 노동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결은 범죄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들과 같은 수용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행위가 문제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행 생활보호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어떠한 법률에 의하여도 고소인들과 같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국민을 강제로 감금하고 노동력을 착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법률에도 “부랑인”이란 과연 누구를 말하는지 규정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우리 국민 중 어떠한 사람이 “부랑인”인지 판단할 권한은 국가권력기구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재중을 비롯한 피고소인들은 자신들이 사법부보다도 더한 판결권을 갖고 있는 양 누가 부랑인인지 판단하고 그에 대한 수용과 노동까지 결정하는 것은 물론 사설교도소를 차려놓고 집행까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야말로 국가보안법상 “정부를 참칭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피고소인들의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가려내고 현행 형법상 적용 가능한 특수감금, 동치상, 특수강도, 동치상죄 등으로 처벌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8. 피고소인들은 법정형 무기, 7년 이상의 중죄를 범하였고, 그 죄질도 사회적 약자로서 국가권력에 의하여 보호받고 최소한의 인간으로의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할 피해자들을 강제로 납치, 감금하고 강제로 노동시켜 노동력을 착취하여 개인적인 치부의 수단으로 삼아 고소인들을 포함한 수용인들을 현대판 노예로 전락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업을 빙자하여 국고보조금을 횡령, 편취하는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피고소인들의 일련의 범죄행위는 비인도적, 반인륜적 범죄의 전형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들의 죄질과 피해의 정도,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등을 감안하여 즉시 출국금지조치를 취하고 구속수사함이 마땅합니다. 아울러 국고환수를 위하여 수십년동안 고소인 등과 같은 피해자들로부터 노동력을 착취, 고혈을 뺏아내는 한편 보조금 명목으로 국고를 횡령, 편취하여 개인적으로 치부한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 | | |
|-----------------------------|-----|
| 1. 양지마을.송현원 퇴소자 면담결과 1차 보고서 | 1통 |
| 2. 진술서 | 34통 |
| 3. 위임장 | 3통 |

1998. 8.

고소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덕우

“죽고 싶어? 양지마을로 와”

인권단체 기습작전으로 공개된 끔찍한 현장… 노동착취·성폭행에 집단 암매장 의혹

人 난 7월16일 아침 7시40분께 충남 연기군 전동면 송성리의 한적한 산골에 자리잡은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 높이 치솟은 담장 속에 파묻힌 채 정적만 흐르던 이곳에 난데없이 낯선 외지인 20여명이 들어섰다. 서너대의 차량을 앞세워 때마침 열려 있던 정문 안으로 들어온 이들은 경비원 3~4명이 “어어”하며 허둥대는 사이 곧장 원생숙소로 밀고 들어갔다.

행이었다. 양지마을의 원생 인권유린 행위 및 비리의혹 등을 은밀히 ‘내사’ 해오다 기습적인 현장방문 조사에 나선 것이다.

이날 현장조사를 주도한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이 양지마을의 인권유린 의혹을 파헤치기 시작한 것은 한 ‘탈주자’의 증언이 계기가 됐다. 지난 7월1일 새벽 양지마을에서 도망나온 원생 박아무개(38)씨가 6일 이 단체를 찾아와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이다. 무려 5년 동안이나 양지마을에서 생활한 박씨가 풀어낸 ‘양지 괴담’은 사랑방 회원들을 격앙시키기에 충분했다. 박씨의 증언대로라면 양지마을은 결코 ‘양지’(陽地)일 수 없는 곳이었다. 원생들에게 대한 불법감금과 성폭행 등 인권유린 행위와 비리로 얼룩진 ‘음지마을’ 일 가능성이 높다고 쇄장으로 세상과 차단된 양지마을 원생들. 양지마을은 인권유린과 비리로 얼룩진 ‘음지마을’이었다.

기족연회 요구했다가는 발길질만

이들이 이중으로 된 출입문을 지나 원생 숙소를 접수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3분 남짓. 말 그대로 전광석화처럼 벌어진 ‘기습작전’이었다. 이른 아침 양지마을의 적막을 깨고 ‘난입’ 한 불청객은 뜻밖에도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 회원과 국민회의 이성재 의원 일

인권운동사랑방측은 판단했다.

박씨가 주장하는 얘기는 이랬다. 그가 처음 양지마을과 질긴 악연을 맺은 것은 93년 3월 말께였다. 서울 강서구에서 한 신문사 보급소부장으로 일하다 그만두고 새 일자리를 찾으려 대전에 왔다가 돈이 떨어져 노숙자 신세가 된 것이 회근이었다. 그는 사흘간 대전역에서 노숙을 하며 배를 끓다 경찰서를 찾아가 보호를 요청했고, 곧장 양지마을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이사장 노재중)에 떨린 부랑인 수용시설 자강원(대전시 대덕구 대화동)으로 넘겨졌다. 이어 두달 남짓 만에 양지마을로 옮겨졌는데 그것이 짐승같은 생활의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매일 새벽 5시3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저녁까지 작업장에서 가방을 만들다 숙소로 향하는 게 하루 일과였다. 물론 일감이 많을 때는



며칠씩 꼬박 밤새워 작업하기도 했다. 노역과 저녁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밤 9시부터는 직원들이 모든 전등을 꺼버리고 출입문을 잠가놓아 끔찍달싹도 할 수 없었다. 가족과 전화통화나 면회를 요구했다간 주먹과 발길질만 되돌아올 뿐이었다고 한다. 것 들어온 원생들은 일단 신입방 쇠창살에 묶인 채 두들겨맞는 '신고식'으로 생활을 시작한다. 혹 말썽을 피우거나 도망갔다 붙잡혀 들어오는 원생들은 죽도록 얹어맞고 양지마을 옆 정신지체자 수용시설인 '송현원' 독방에 갇히게 된다고 박씨는 말했다. 또 젊은 여자원생들은 '간부' (직책을 맡은 고참 원생)나 시설 직원들의 노리갯감이 되기 일쑤였다는 게 박씨의 주장이다. 97년 이사장의 지시로 박씨와 살림을 차린 박아무개(23·여)씨는 천성원에 딸린 대전 원명학교에 다닐 적 교사들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해 아이까지 낳았고, 양지마을에 와서도 작업반장 등으로부터 상습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10시간 노동' 한달 임금은 1만원

이곳에서 짹을 만나 살림하는 여자들은 아이를 낳을 권리마저 박탈당한 채 산다.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이사장 등의 지시로 간부급 남자 원생과 살림을 차린 이들 여자원생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루프' (폐임기구)를 착용해야만 한다. 박씨는 "수용소쪽이 어린애를 '작업능력이 없어 재정에 전혀 보탬이 안 되면서 끌 때까지 식비만 축내는 애물단지'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곳에선 원생들에 대한 강제노역과 임금착취 등을 통해 운영자가 수십억원대의 부정축재를 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부랑인 수용소인 양지마을과 정신지체인들이 사는 송현원. 신체장애인들이 있는 양지요양원 등 3개 시설 원생 860여명은 거의 열외없이 노역을 해야 한다. 중증요양시설로 분류된 요양원 환자들조차 쇼핑백 만드는 일을 하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이들이 하루 7~10시간씩 가방과 자전거, 봉제 제품 등을 만드는 일을 하고 받는 임금은 고작 월 1만원 안팎에 불과하다고 한다.

박씨는 "국가에서 임금을 주는 영양사·취사원·생활지도원 등 기능적 일을 원생들이 대신 맡아하고 있고, 정부 보고자료에는 빠진 수용자가 상당수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임금 횡령액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천성원쪽이 건물 신축비 및 환자 의료비 등으로 나온 국가보조금을 가로채 왔다는 의혹



인권운동사랑방의 도움으로 탈주 보름 만에 아내와 재회하는 제보자 박아무개씨.

도 제기했다. "양지요양원을 지을 때 적벽들을 납품하던 회사가 망해 거꾸로 처리비를 받고 적벽들을 가져다 공사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나랏돈 30억원을 챙겼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것이다.

박씨의 주장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주검 암매장에 관한 것이다. 양지마을 인근 '개미고개'에 그동안 숨진 원생들의 주검 수백구가 묻혀 있는데 이중 상당수는 수용소쪽이 사인규명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파묻었다는 주장이다. 또 직원들의 가혹행위에 따른 후유증에 시달리는 원생도 부지기수라고 증언했다. 탈출을 기도했거나 작업을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집단폭행당한 박아무개, 윤아무개씨 등은 수년째 허리와 가슴통증 따위로 고생한다고 박씨는 말했다.

이같은 박씨의 주장은 이성재 의원과 인권단체의 현장방문조사 등을 통해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조사단은 먼저 여자원생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박씨의 동거녀 외에 송현원에 수용중인 최아무개(25·여)씨로부터 "얼마 전 직원 2명이 밤 9시 점호가 끝난 뒤 나를 불러내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노임착취 및 보조금 횡령의혹에 대한 원생들의 증언과 물증도 쏟아져나왔다. 원생들은 "송현원과 양지마을 뒤에 있는 신축 건물 등 각종 시설을 우리 손으로 직접 지었는데 월 1만5천 원 남짓밖에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천성원쪽이 공개한 원생 개인통장 가운데 안아무개(50·여)씨 통장에는 최근 5년간 그가 받은 임

금총액이 고작 10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단은 이날 송현원 건물 옥상에서 원생 노역과 관련한 10여가지의 은닉 장부를 찾아내 정밀분석에 들어갔다. '작업일지'와 '가방 수발부' 등의 자료에는 그동안 원생들이 하청생산한 제품 납품현황 등이 상세히 담겨 있어 천성원쪽의 임금횡령 의혹 여부를 규명하는데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개미고개의 비명

원생들은 직원들의 구타 등 가혹행위에 대한 증언을 가장 많이 쏟아냈다. 알코올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자진 입소했다는 이아무개(51)씨는 "무심코 그만 나가서 포장마차라도 해보고 싶다"고 말했더니 직원들이 '그렇게 탈출하고 싶니'며 집단폭행을 해 지금도 허리를 못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요즘은 없어졌지만 처음 들어왔을 때는 말 안 듣는 원생들을 나무로 만든 관에 며칠씩 가둬놓고 매소변도 안에서 누게 했었다"고 증언했고, 주변에 있던 다른 원생들도 이 말에 동의했다.

50대 초반의 김아무개씨 부부는 퇴소 희망자를 가리기 위한 조사단과의 면담에서 "당신들한테 나가겠다고 하면 책임질 수 있느냐. 책임 못지면 우리만 독방에 갇혀 몰매를 맞게 된다"며 "잘못하다간 '전수경' 이런 여자 원생처럼 정신병자로 몰려 악물중독으로 폐인이 된다"고 걱정을 털어놨다. 조사단 자문의사로 참여한 연희신경정신과의원 원장 김병후씨는 "수용소쪽이 가벼운 증상의 정신질환자들에게 까지 한알만 먹어도 마비증세가 오는 정신과 치료약물을 3~4알씩 상습 투약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검 암매장 의혹에 대해서는 수년간 공동묘지가 있는 '개미고개'에서 원생 사망자의 염을 맡아했다는 한 노인 원생의 '놀랄 만한 증언'이 나왔다. 83년 6월에 입소했다는 그는 "구타 당해 죽은 사람은 몰래 밤에 염을 해 묻었고 아파도 제대로 치료를 못받아 죽은 사람도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라며 "당장이라도 개미고개에 가면 매장 지점들을 짚어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와 별도로 83년 양지마을에서 탈출했다는 김아무개(37·요리사)씨는 "주검 암매장은 초창기부터 무시로 이뤄져 온 일"이라며 "도망 가다 붙잡힌 원생 등이 맞아 죽으면 '깨진 짬 (죽은 원생을 일컫는 은어) 처리반'이 밤중에 가마니에 쓰니 뒤 리어카에 싣고 야산에 가 파묻곤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쪽은 조만간 개미고



개 벌금조사에 나서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의혹에 대해 양지마을쪽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노재중 이사장은 여자원생들 성폭행 여부에 대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자원생들이 횡설수설하는 말을 곧대로 믿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불법감금에 대해서도 그는 "처음 입소 때부터 수시로 담당 공무원들과 면담을 하는데 어떻게 멀쩡한 사람을 강제로 데려다 감금한다는 것인가"고 반문하며 "무의탁자 등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원하면 언제라도 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주검 암매장 의혹에 대해서도 "군청 감사와 국정 감사 등을 수시로 받는 상황에서 사망 원생들을 불법 암매장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강력히 부인했다.

'33.3%의 진실'을 밝혀라

그러나 노 이사장은 숙소 문과 창에 쇠창살을 설치한 데 대해서는 "법에 위반되는 줄은 알지만 혹시 있을지 모를 불상사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또 원생들에 대한 폭행 의혹에는 "직원들에 대해 원생 구타를 금하고 있지만 신입원생들이 묵는 신입방에서는 '불상사'가 빚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생 중 난폭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간혹 폭력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폐임 문제에 대해서도 노 이사장은 "여자원생들의 정신상태를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법에 저촉되면 처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면 도대체 이들 원생은 자신들이 '아우슈비츠'라고 부르기를 서슴지 않는 이곳까지 어떻게 오게 됐고, 왜 여태껏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원생과 천성원쪽의 주장



단 한번도 외부와 연락한 적이 없느냐는 인권운동사랑방 관계자의 질문에 대답수 손을 들었다(맨 위). 양지마을 옆 정신지체자 수용시설인 '송현원'에서 성폭행이 다반사로 이뤄졌다는 증언이 나왔다(위).

은 너무나 상반된다. 이사장 노씨는 "주로 알코올중독과 정신질환 따위로 가족에게 해코지를 일삼다 가족 등의 신고로 들어오거나 역광장 등에서 부랑인 생활을 하다 경찰에 의해 넘겨졌다"며 "하지만 비깥과 연락이 자유롭고 본인이 원하거나 보호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내보낸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당수 원생들은 "억울하게 끌려왔지만 가혹행위를 당할까봐 무서워서 나가고 싶다는 얘기를 못했다"고 반박했다. 한 원생(51)은 "동아건설의 리비아 수로건설 현장에 인부로 나갈 준비를 하다 재산문제로 심하게 다툼 동생이 나를 정신이상자로 몰아 이곳에 오게 됐다"며 "나처럼 집안문제로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이 여러명"이라고 주장했다. 또 원생 가운데 열에 아홉은 "입소 뒤 단 한번도 집이나 연고지

에 연락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고, 4개월 전 자진입소했다는 심아무개(36)씨도 "편지나 전화는 꿈도 못꾼다"고 말했다. 이날 조사단의 노력으로 원생 중 24명은 풀려났다.

노 이사장은 이에 대해 "그 어느 쪽 말도 전적으로 믿지 말라. 내 말 33.3%, 원생들 말 33.3%, 공무원 말 33.3%씩을 취합해 들으면 그것이 진실"이라고 말했다. 그의 주장을 그대로 따른다고 할지라도 원생들의 억울한 하소연 가운데 최소한 3분의 1은 진실인 셈이다.

'형제원 출신' 간부로 재직중

그렇다면 한해 몇 차례씩 감사와 지도감독을 나오는 연기군청과 보건복지부 등 감독 관청들은 '33.3%의 진실'을 한번이라도 귀담아 들어보기는 했던 것인가.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조사단 방문 소식을 듣고 달려온 연기군청 사회과 이아무개 계장은 "올 초 원생 250명과 일대일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며 "면담 일시까지 댈 수 있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원생들의 대답은 하나같이 "그 공무원은 얼굴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이날 오후 양지마을에서 풀려난 24명의 원생 가운데 한명이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하게 이 계장과 대질을 시켜달라"고 요구했으나, 이씨는 끝내 응하지 않았다. 인권운동사랑방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96년도 천성원 감사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국가보조금 액수만 나와 있고 정작 보조금이 쓰인 용도에 대한 감사내용은 거의 전무했다"며 "한해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받는 시설에 대한 감사가 이렇게 허술할 수 있느냐"고 개탄했다. 이와 관련해 천성원 안팎에서는 "5공 때 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권력 핵심인사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 대전과 연기에 8개의 시설을 갖춘 공통급 복지시설로 고속 성장했고, 지금은 국회의원 이아무개씨가 뒤를 봐준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사장 노씨도 인정했듯이 현재 양지마을 등 천성원 산하 시설에는 한때 원생들에 대한 끔찍한 인권유린 행위가 밝혀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출신 직원 일부가 간부로 재직중이라고 한다.

과연 '양지마을 폐담'은 제2의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번질 것인가. 아니면 이전에도 그랬듯이 또한번의 의혹 제기 선에서 흐지부지될 것인가. 앞으로 당국의 조사결과가 주목된다. 21 글 하석 기자/한겨레 사회2부 사진 이진홍 기자

감금 폭행 강제피임... 그곳은 '생지옥'이었다

고발!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의 인권유린 실태

「인」

생의 종착역, 「감옥보다 못한 곳」. 충남 연기군에 있는 부랑인 수용 시설 양지마을 원생들은 자신들의 거처를 이렇게 부른다. 감옥은 만기출소 날짜라도 정해져 있지만 양지마을은 출소의 기약 조차 없기 때문이다.

원생은 정원 475명. 양지마을 실상이 세상에 알려진 계기는 7월1일 그곳을 탈출한 박영 섭씨(38)가 우여곡절 끝에 인권운동단체인 서울의 인권운동사랑방을 찾으면서부터.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감금과 폭행, 노동착취 등 불법과 인권유린이 횡행한다는 소식을 접한 인권운동사랑방과 천주교인권위 등은 진상조사단을 구성, 양지마을에 급파했다.

7월16일 아침 7시30분. 조사단은 국민회의 이성재의원과 김병후연세정신클리닉원장, 취재진 40여명과 함께 양지마을을 기습방문했다. 송현원(정신요양원), 양지요양원(양로원) 겸 정박아·지체장애인 수용시설과 같은 올타리 안에 위치한 양지마을은 사회복지시설 임에도 불구하고 높이 3.7m의 담과 철창이 설치돼 있었다. 걸모양이 마치 교도소를 방불케 했다. 가장 먼저 들어간 여자생활실에서 만난 원생들은 이구동성으로 「집에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과거에도 간혹 그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군청의 감사가 있었으나 「후환이 두

려워」 감히 그럴 마음조차 먹지 못했다는 게 그들의 설명이었다. 그나마 남자생활실은 양지마을측이 문을 잠궈 창문을 통해 원생들과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었다. 그 곳에 16년째 갇혀있다는 박홍만씨(76)는 「술 한잔 먹고 대전역에서 끌려와 여태 못나가고 있다, 면서 「이 곳은 감옥보다 더한 곳」이라고 외쳤다.

조사단 일행은 「3.7m 담 안이 마치 노재중 이사장의 개인왕국과 같다」고 입을 모았다. 노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에는 양지마을, 송현원, 양지요양원 외에도 대전 시내의 한일병원, 연명학교(농아시설),



비깥세상으로 나가고 싶어요 조사단과 양지마을 직원들 사이에 수차례 몸싸움이 있었다(맨위). 비깥에 나가고 싶은 사람은 손들라는 조사단의 말에 일제히 손을 드는 양지마을 남자원생들(가운데). 초창기 양지마을에서 사망한 200여명이 묻힌 개미고개 묘지(아래). 이영돈씨는 자신의 손으로도 여러 명을 묻었다고 회고한다.



이보다 더 나쁜 어떤 곳에 갇힌 체 청년들이 조사단에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양지마을 원생들(위), 송현원 안의 징벌방으로 이용되는 통방(오른쪽).

자강원(부랑인 수용시설) 등이 더 있다.

놀랍게도 그곳에서는 이사장이 지정하는 이성과 짹짓기가 이뤄지는 데다. 여자원생들에 대해선 강제피임도 시행되고 있었다. 그렇게 짹짓기를 해 부부생활을 하는 수용자는 전체 450여명 중 16쌍에 불과한데, 일종의 「특권」을 주는 대신 살림낼 때 여자원생에게 피임을 위해 강제로 투프 시술을 한다는 것.

이사장이 지정하는 이성과 짹짓기

원생들이 양지마을 생활을 힘겨워하는 데에는 「노역」도 한몫한다. 양지마을에는 쇼핑백 자전거 철공 가방 공 도장 자동차공구함 등 공예 호차 등을 만드는 9개의 공장이 있다. 원생들은 짜여진 시간표대로 각 공장에서 하루 8~10시간씩 일해야 한다. 밤 9시 이후에는 생활관의 문을 밖에서 잠궈 출입이 금지된다.

양지마을측이 이들에게 노역을 시키려면 매년 본인의 작업수락서가 필요하지만, 일렬로 세운 뒤 도장을 받기 때문에 거부는 생각조차 못한다고 한다. 그렇다고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는 것도 아니다. 이들의 한달 노임은 6000원에서 1만3000원 정도. 그것도 매점에서 물건과 바꿀 수 있는 카드 형태다. 이밖에 각자 통장에 적립되는 금액이 있다는 게 양지마을측 주장이지만, 5년 가까이 생활해온 원

생의 적립금 합계는 100만원에도 못 미친다.

그러나 아무리 힘에 겨워도 원생들은 그곳을 떠날 수 없다. 「바깥세상」에 구출을 호소할 수도 없다. 그 곳에선 외부로 편지나 전화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신문·잡지의 반입도 허용되지 않는다.

정신질환자들의 요양시설인 송현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수용과 치료가 목적이어야 할 송현원에서도 「앉아있을 힘만 있으면」 일해야 한다. 송현원 1층 한구석 가

로 80cm 정도의 쪽문을 열고 좁은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자 200평 규모의 작업장이 나왔다. 송현원 원생들이 수출용 쇼핑백을 만든다는 그곳에는 가위 칼 신나 노끈 등 정신질환자에게 주어선 안되는 기구들이 널려 있었다. 원생들과의 면담에서는 양지마을에서 「찍혀」 송현원으로 보내진 사람들이 적지 않으며, 정상인이 정신질환자로 몰려 약물을 투여받은 뒤 폐인이 된 경우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가출 사고 노숙자 「가시밭 인생」

인권단체에 실상 고발한 박영섭씨

양지마을의 실상을 인권단체에 알린 박영섭씨는 한때의 좌절 때문에 이른바 「부랑인」으로 낙인 찍힌 경우. 고졸학력에 신문보급소 부장으로 일하던 그는, 가정파탄에 따른 가출과 불의의 오토바이사고 이후 거리에서 노숙자 생활을 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찾은 대전역에서 사흘을 굶으며 노숙한 뒤 그가 찾아간 곳은 대전경찰서. 오토바이사고로 다친 발이 낫는 동안 지낼 곳

“여보 이젠 행복하게 살자” 박영섭씨는 양지마을에 진입하자마자 아내 박영한씨부터 찾았다.

을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그때 보내진 곳이 바로 「자강원」이란 부랑인 수용시설.

두달 뒤 노재중이사장의 눈에 띠어 그는 양지마을로 옮겼다. 젊고 성실한 자세가 이사장의 눈에 들어 매점 운영을 맡았고, 피복과 자체 관리까지 겸했다.

97년 6월에는 이사장의 지시로 농아인 박영한씨(23)와 살림을 차렸다. 박씨 부부는 97년 12월 말 첫 탈출에 성공했지만, 두달 만에 다시 양지마을로 잡혀왔고 그 뒤 강제로 헤어졌다.

최근 두번째 탈출에 성공한 그는 박영한씨를 구출하겠다는 일념 뿐이었다. 박영섭씨는 조사단과 함께 양지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여자생활실로 뛰어들어 아내를 찾아내고는 수화로 「이제 안심해도 된다」며 「앞으로 열심히 행복하게 살자」고 다짐했다.



인권운동사랑방

SARANGBANG Goup for Human Rights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2가 8-29 4층 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수신: 인권·사회·시민단체 귀중

제목: 9월 14일, 양지마을·송현원 대책 마련을 위한 보고대회 참석 요청

1. 안녕하십니까? 귀 단체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7월 16일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진 노예지옥 양지마을과 송현원 사건에 대한 보고 대회를 갖고자 합니다. 사건 발생 두달이 경과된 지금, 이번 사건이 갖는 의미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보고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내의 인권 유린 문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고자 하는 민간감시단도 이 자리에서 논의하게 됩니다.

3. 10여년 전 사회에 충격을 던져주었던 형제복지원 사건 이후에도 양지마을과 같은 시설이 우리 사회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양지마을 사건이 올바로 정리되지 못한다면, 다시 10년 뒤에도 이런 시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의 올바른 대책을 세우는 데 귀 단체의 역량을 결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4. 오는 9월 14일 오후 2시 종로성당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998년 9월 10일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

별첨> 1. '양지마을·송현원' 대책 마련을 위한 보고대회

2.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을 방지하기 위한 민간감시단 구성을 위한 제안서

<별첨 1> ‘양지마을 · 송현원’ 대책 마련을 위한 보고대회

1. 목적

- 양지마을 · 송현원 사건 경위와 그 의미에 대한 공유
- 동 사건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촉구
-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을 방지하기 위한 민간감시단 결성 논의

2. 행사 개요

- 행사명: ‘양지마을 · 송현원’ 대책 마련을 위한 보고대회
- 때: 98년 9월 14일(월) 오후 2-6시
- 곳: 종로성당 3층 강당(종로 4가 종묘공원 주차장 옆)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3. 행사 내용

제 1부 양지마을 · 송현원 사건 보고회

사회: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 2:00-2:20: 사건 경과보고/박래균(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 2:50: 양지마을 · 송현원 퇴소자 증언 및 대책 요구/김영화, 김광일씨 등
 - 3:00: 정부 및 각 정당에 보내는 서한 채택/퇴소자 일동
 - 3:10: 휴식

제 2부 양지마을 · 송현원 사건 사후대책에 관한 워크샵

- 3:10-3:30: 사법처리 어떻게 돼야 하나/이덕우(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3:40: 질의 · 응답
- 4:00: 사회복지 시설 관리 문제에 관하여-양지마을 · 송현원을 중심으로/조홍식(교수,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 4:10: 질의 · 응답
- 4:40: 지정토론/김정열(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소장), 김형기(인천은혜병원 건강관리소장), 법학교수 1인
 - 5:10: 종합토론
 - 5:20: 정부에 보내는 건의문 채택

4. 참가범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단체/참여연대 사회복지 특별위원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사회복지운동단체/사회복지 전공교수/각 대학 사회복지학과 및 특수교육학과 학생/각 정당 인권위원회 관계자/검찰,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당국자

<별첨 2>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을 방지하기 위한 민간감시단 구성을 위한 제안서

수신: 사회복지 및 인권관련 단체 및 인사

발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1. 민간감시단 구성의 필요성

- 일회성 폭로로는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 시비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일례로 양지마을 노재중 이사장은 지난 87년에도 같은 사안으로 구속된 바 있지만 이후 더 크게 사업을 확대할 수 있었다.
- 현실적으로 관계당국의 내실 있는 지도·감독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검찰·경찰의 인지에 의한 사건처리도 기대할 수 없다. 민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압력이 있을 때야만 당국의 성실한 지도·감독을 유도할 수 있다.
- 현재 사회복지 시설 내 생활자의 규모는 전국 교도소 수용인원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이다. 이들은 강제 감금 및 강제 노역 등 상시적인 인권유린에 노출돼 있으나 사회 일반의 관심은 희박한 상태이다.
- IMF 체제하에서 노숙자 등 잠재적인 사회복지시설 수용 대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 민간감시단의 목적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감시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구조적 비리와 인권유린 소지를 제거한다.
- 관계당국의 성실한 지도와 감독을 촉구한다.
- 사회복지시설의 공개화와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 사회복지시설 내 생활자의 인권보장과 신장을 위해 노력한다.

3. 민간감시단 구성 범주

- 사회복지 및 법학관련 교수, 의사, 변호사 등 전문가
- 사회복지 및 인권관련 단체 실무자
- 사회복지학과, 특수교육학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보조적 결합

4. 민간감시단의 조직

- 각 단체간 상설 네트워크 조직을 기본으로 한다.
- 공동대표와 집행위원회를 설치한다. 집행위원회 산하에 집행 부서를 둔다.

5. 민간감시단의 활동 내용

- 사회복지시설 현황 조사 및 보고서발간
- 사안에 따라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
-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법적·행정적 제도 개선 및 마련을 위한 모색, 이를 위한 대정부 로비
- 각 시설과 근접하여 활동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직의 발굴

6. 민간감시단 발족 일정

- 9월 14일: 양지마을·송현원 보고대회에서 제안
---> 참가 의사가 있는 단체 및 인사 교섭
---> 발족을 위한 준비모임 2-3회
---> 민간감시단 발대식 및 기자회견(9월 말 예정)

7. 요청사항

- 이 제안서에 대한 귀 단체의 입장은 논의하여 9월 14일 보고대회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고대회 이후 각 단체 집행 책임자급의 모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 책임자급의 모임을 2-3차례 가진 후 대표자 회의를 거쳐 발대식을 갖는 단계로 일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 현재 보건복지부는 양지마을 사건 이후 부랑인 수용시설에 대한 조사작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으며, 이를 극히 일부 민간단체에 제안하였던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끝)